

알기 쉬운 수출 계약서 작성 실무

 중국 I 물건매매계약



알기 쉬운 수출 계약서 작성 실무

중국 I 물건매매계약



목 · 차

제1편 국제물건매매계약	7
제1장 국제물건매매계약의 기본 내용	8
제2장 국제물건매매계약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의 보호	51
제3장 국제물건매매계약의 분쟁해결	60
 제2편 표준계약서	 73
1. 매매계약서 (한글본, 영문본, 중문본)	74
2. 독점판매계약서 (한글본, 영문본, 중문본)	110
3. 지역총판계약서 (한글본, 영문본, 중문본)	152

제1편
국제물건매매계약

제1장 국제물건매매계약의 기본 내용

국제물건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가 물건을 매매하거나 대리판매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물건은 유형자산(화폐·부동산·상품 등과 같이 형체를 가진 재산)을 의미한다. 기술이나 특허 등 무형자산의 거래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설명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국제물건매매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두는 것은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계약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및 기타 계약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체결된 국제물건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자료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제물건매매계약 체결 시 한국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필수적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한국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각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확정,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추궁, 피해자 일방의 권리보호, 분쟁의 처리방법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으며, 침해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제물건매매계약 체결 시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의 기본 정보
2. 계약의 적용 지역
3. 물건의 수량, 종류 및 가격
4. 물건의 품질에 대한 약정 및 포장
5. 납품기간 및 납품방식
6. 품질검사 기간 및 방식
7. 물건대금의 결산방식
8. 계약 위반 시 위약책임
9. 계약의 분쟁 해결 방법

이하에서는 국제물건매매계약에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위의 내용들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I. 매매계약 상대방의 기본 정보

1. 갑의 진술과 보증

갑은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보증을 하는 바이다.

- 1.1 갑은 모든 법적권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위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모든 충분하고 필요한 위임을 받은 상태이고,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따라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 1.2 본 계약에서 갑이 승낙한 모든 사항과 의무는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 1.3 갑은 본국의 법률 하에서 본 계약에서 규정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은 갑이 현재 또는 향후에 기타 계약, 협의에서 약정한 의무와 충돌이 없을 것이며, 갑과 관련된 사법재판, 법원의 명령 등과 충돌이 없을 것이다.

2. 을의 진술과 보증

을은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보증을 하는 바이다.

- 2.1 을은 모든 법적권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위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모든 충분하고 필요한 위임을 받은 상태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따라 완전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 2.2 본 계약에서 을이 승낙한 모든 사항과 의무는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 2.3 을은 본국의 법률 하에서 본 계약에서 규정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은 을이 현재 또는 이후에 기타 계약, 협의에서 약정한 의무와 충돌이 없을 것이며, 을과 관련된 사법재판, 법원의 명령 등과 충돌이 없을 것이다.

1. 상대방 정보 확인의 필요성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다. 이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주소지, 연락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계약 집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연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할 경우 등에도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계약 상대방의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과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대방 업체에 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상대방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상대방 업체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의 일부 영세업체들은 실제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인감만 들고 다니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 혹은 회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금이 없는 유령회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와 계약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자금력도 충분하다 하더라도 신용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행을 잘 수행하지 않거나, 대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중국 업체 조사경로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때 한국 업체가 직접 중국 업체에 관해 조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기존에 구축된 다음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코트라, 무역협회를 통한 조사

우선, 중국에 진출한 코트라(KOTRA), 무역협회의 현지 사무소를 통하여 사전에 상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코트라나 무역협회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투자와 무역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다년간 여러 가지 투자, 무역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해왔기에 현지 업체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의 투자 또는 거래관계에서 고충을 겪을 때 코트라 또는 무역협회를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과 분쟁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에 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2) 현지 한국 경영인들을 통한 조사

둘째, 현지 한국 상회 또는 현지에서 다년간 사업을 경영해온 한국인들을 통하여 현지 관련 업계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 상회와 현지에서 다년간 사업을 해온 한국인 경영자들은 경험을 통하여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 두기 마련이다. 그들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코트라나 무역협회가 갖고 있는 정보를 비교하여 체크할 경우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3)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조사

셋째, 한국무역보험공사(전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하여 중국 업체들의 신용도를 조회할 수도 있다. 한국 업체들은 외국에 투자하거나 외국과 거래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금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중국 업체와 거래하여 손해를 보고 무역보험공사에 보험금 신청을 한 사례를 검색하여, 중국 업체들의 불량기록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상대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신용조사를 한 결과 상대 기업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이 가는 경우에만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과거에 거래관계가 없는 새로운 상대이며 여러 가지 조회를 통하여서도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당해 업체와의 거래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주의사항

소량주문으로 신뢰관계를 쌓은 후 대량주문

일부 중국 업체들은 초기에 소량의 주문을 하고 물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갑자기 한 번에 대량의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여러 번 거래를 해오던 업체라는 믿음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물건을 배송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로 대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 대금지급 지체 중 어느 날 갑자기 업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중국 현지에 가보면 회사가 사라져 버리고 사무실도 비어 있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실제 이렇게 손해를 본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몇 번 거래를 해오던 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대량 주문을 해오는 경우에는 거래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4. 중국 기업의 영업허가

정식 계약을 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정보를 조회하는 정도에 머물지 말고, 상대방 업체의 기본정보를 증거자료로 남겨두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때에 상대방을 찾아내어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기업영업허가(企業營業執照)

중국법에 의하면, 중국 내 기업들은 모두 〈기업영업허가(企業營業執照)〉를 발급받아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인 기업은 모두 기업영업허가를 갖고 있다. 중국기업과 거래할 때에는 당해 영업허가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당해 사본과 원본을 대조한 후 사본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영업허가 사본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직전 연도 검사에 통과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2)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경영범위

임의로 신고한 경영범위를 따라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경영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즉, 기업 측에서 원하는 모든 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경영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허가에 기재된 영업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하여 당해 기업이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3) 기업등기

중국법상 모든 기업은 기업등기기관¹⁾에서 기업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업체로부터 ‘기업영업허가’를 받은 후 현지 정부의 기업등기기관에 가서

영업허가에 기재된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사 례]

한국 모 유통기업은 중국 현지 기업과 중국 내 총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중국 현지 기업과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애로사항이 있어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한 결과 중국 현지 기업의 경영범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당해 기업의 영업허가에 의하면 도매 업무만을 할 수 있고 소매업무가 불가능하였으며, 판매를 위한 직영점포 개설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중국의 기업에 확인을 요구하자 중국기업은 소매를 할 수 있다는 답변만 하였을 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보충설명]

위 사례에서 중국기업은 경영범위가 도매 업무에만 한정되어 있고, 직영매장에 필요한 소매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당해 중국기업이 소매 직영매장도 개설하기를 바라는 한국기업의 희망사항과 큰 차이가 있다. 중국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의 유형, 거래의 형태 등에 따라 현지 중국기업이 충족해야 할 사항들이 있게 되며,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충족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중국정부의 과련 부서 명칭은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이며 각 시청, 구청 산하에 모두 당해 부서가 있다. 예를 들면 상해시 시청 산하에는 상해시공상행정관리국이 있으며, 상해시 포동신구 구청 산하에는 상해시포동신구공상행정관리국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 규모 기업의 기업등기는 구청 산하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II. 계약의 적용지역

3. 제품의 공급과 독점판매 라이선스

- 3.1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을 제외) 전역으로 한다.
- 3.2 본 계약에서의 독점적 판매라 함은 을이 본 계약의 제품에 대하여 중국 국내에서 유일한 판매 총 대행이 되는 것이며 을의 판매 취급 방식은 소매, 도매, 서브 판매대행 지정 등의 수단을 포함하며 반드시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갑은 계약기간내에 기타 제3자에게 이 지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는 안되며 자신의 명의로 혹은 그의 공급자, 생산자 혹은 계열사를 통하여 동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
- 3.3 상기 조항에서의 독점적 판매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직접 판매가 가능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 3.4 을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갑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갑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독점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 3.5 갑과 을은 서로 독립적인 기업법인으로, 쌍방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인하여 합작, 합자 혹은 연합경영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상대방의 경영행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어느 일방이든 그 경영 활동중에서 제3자에게 이러한 사실과 상반되는 증명, 의사표시, 해석 혹은 표현을 하여서는 안된다.

1. 지역별 판매업체 지정

일반적으로 중국 내에 유일한 판매업체를 지정하여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경우, 중국을 일정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판매업체를 두는 것이 좋다.

※중국 판매지역 분류의 예

참고로 중국의 행정구역은 일반적으로 23개 성(省), 5개의 소수민족 자치구(自治區), 4개의 직할시(直轄市-한국의 광역시와 유사함), 홍콩과 마카오 2개의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로 나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모두 성급 행정구역(省級行政區域-한국의 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정구역 분류에 따라 1개의 성이나 2-3개의 성을 묶어 하나의 판매지역으로 보고, 각 지역별로 판매업체를 확정하는 것이 좋다.

2. 계약 삽입조항

3.6 을은 판매지역 내에 한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갑의 서면허가를 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판매지역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하급 소매상 또는 서브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에 ‘중국의 판매업체는 지정 지역에서만 판매를 하며, 기타 지역에서 그 어떤 형태로든 판매가 금지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지역이라도 독점판매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제외조항

주의할 점은,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특별행정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률을 집행한다. 따라서 홍콩과 마카오 지역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는 중국법이 아닌 홍콩, 마카오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대만은 현재 중국 본토지역과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헌법에 의하면 대만도 중국 영토의 일 부분이다. 따라서 중국 본토지역에 한정하여 판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에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Ⅲ.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 수량 및 가격

- 주문서 기재 사항

3. 제품의 주문과 납품 절차

- 3.1 쌍방이 본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 간의 구체적인 거래 및 거래의 조건은 쌍방 간에 확인한 주문서에 의하여 확정된다. 주문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확정하지 않은 부분은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 3.2 을이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주문서를 발송하며, 갑은 주문서를 받은 후 10일 내에 서면으로 주문서의 내용에 따라 제품을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한다. 을이 갑에게 발송한 주문서는 갑의 서면 확인을 받기 전에 철회 가능하다.
- 3.3 갑이 을의 주문서에 따라 제품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을이 갑의 서면확인을 받은 날에 주문서가 정식 확정된 것으로 한다.

주문서가 확정된 후 을은 그 어떤 이유로든 주문서를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 3.4 갑이 주문서에 대하여 수정요구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을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서면 수정요구를 받은 후 갑에게 새로운 주문서를 발송한다. 을이 주문서를 발송하고 갑이 주문서를 수정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갑이 최종 주문서를 확인할 때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의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 3.5 주문서에는 제품의 종류와 규격, 가격(총 가격과 단가, 할인금액 등을 포함), 수량, 납품기간, 보험에 대한 요구, 포장에 대한 요구, 납품의 목적지 및 특수한 운송방식 등의 요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 3.6 주문서에 별도의 설명 혹은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납품시간은 일반적으로 을이 당해 제품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35일 내로 한다. 주문서에 별도의 설명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납품방식은 FOB(한국 인천항)이고 운송방식은 해상운송으로 한다. 포장은 을이 요구하는 일반 포장방식으로 하며 보험은 을이 책임진다.
- 3.7 갑은 자체의 비용으로 제품을 한국에서 수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속을 한다. 을은 자체의 비용으로, 갑이 제공하는 유효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중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속을 한다.
- 3.8 화물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을은 화물이 을의 주문서에 기재한 목적지에 도착한 후 10일 내에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품질검사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품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3.9 을은 품질검사에서 화물의 품질이 주문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은 화물이 을의 주문서에 확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후 20일 내이다. 당해 기한을 초과한 경우 을은 품질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물건의 종류

국제물건매매계약에서는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약정도 중요한 내용이다. 매도인은 계약에 약정한 물건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정확하게 납품해야 한다. 물건의 종류에는 물건의 정확한 명칭, 모델명, 규격, 사양 및 상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타 식별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2. 물건의 수량

물건의 수량이라 함은 물건의 계량단위와 정확한 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계량단위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으며 중국과의 국제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 표준화 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표준 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계량단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물건의 가격

(1) 가격의 약정

물건의 가격을 약정함에 있어, 거래하는 물건의 유형이나 특징에 따라 단가를 정하는 방식이나 전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계절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는 물건의 경우, 그러한 상황별로 각각 가격을 약정해야 한다.

(2) 화폐의 선택

가격을 약정할 때 화폐의 선택도 비교적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과 무역을 할 경우 가격에 적용되는 화폐에 대하여는 중국법상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화폐의 환율 흐름에 따라 환차손(환율 변동 시 발생하는 손실)이 제일 적은 방식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한국 화폐(원화)로 가격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중국의 매수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인은 관습적으로 국제무역을 할 때 달러나 유로 등 자유로운 환전이 가능한 화폐를 선호한다. 현재 환율추세에 따르면 RMB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RMB를 화폐 단위로 약정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RMB의 환율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위험부담이 따른다.

(3) 세금 등의 비용 포함여부

가격을 확정할 경우 매매거래 관련 세금과 비용들도 가격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매매거래 관련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운송비용, 보험료, 통관과정의 비용, 수출관세, 수입관세 등을 말한다. 한국에서 물건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 세관은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거의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 업체가 수입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수입관세가 비교적 높은 경우, 관세의 부담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기타 비용의 문제

운송비용, 보험료, 통관비용 등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할지, 아니면 매수인이 부담할지에 관해 명확하게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료의 부담에 대한 약정은 보험 가입의무와도 직결된다. 매매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큰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자, 보험료 부담자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IV. 품질에 대한 약정 및 포장

5. 품질보장과 제품의 하자

5.1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5.2 다음의 경우, 당해 제품은 납품 품질 불합격으로 본다.

- a) 수량 부족하며, 규정된 오차범위를 초과할 경우
- b) 화물의 품질이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c) 한국정부 소속의 품질검증기구 또는 중국정부 소속의 품질검증기구에서 증명한, 화물이나 그 기술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경우

5.3 갑은 갑이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본 제품의 품질이 중국 법률과 중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강제적인 품질기준, 안전기준과 기타 기준에 부합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5.4 본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은 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을에게 밀봉한 샘플 2세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때마다 이에 상응하여 샘플을 교환해야 한다. 당해 밀봉한 샘플은 품질분쟁이 발생할 경우 품질검사대조물로 사용할 수 있다. 밀봉한 샘플의 품질수준은 갑의 동일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증명 또는 대조평가하는 작용을 한다.

6. A/S

갑은 을에게 필요한 A/S를 제공해야 한다. A/S 의무기간은 매번 갑이 납품을 완료한 후 1년으로 한다. 구체적인 A/S 방식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1. 품질조항의 중요성

국제물건매매계약에서 물건의 품질 관련 조항은 필수적인 거래조건으로 간주되며, 매매 쌍방이 물건 인수인계를 할 때 기본 기준이 된다. 매매하는 물건은 반드시 약정한 품질에 부합되어야 하며 물건이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조건 하에 수리, 감가 처리 또는 대체 물건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또한 물건의 품질은 물건의 가격과도 직결된다. 특히 중국시장의 경우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수준과 소비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가격보다 구매하는 물건의 품질을 더욱 중시하고 품질에 대해 점점 더 까다로운 요구를 제시하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물건의 품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서에 물건의 품질요건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2. 품질기준 약정방법

국제물건매매계약에서 물건의 품질을 약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서면으로 설명하는 방법

서면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란 문자, 도표, 그림, 사진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물건의 품질을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실무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구체적인 규격을 정하는 방법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매 쌍방은 물건의 구체적인 규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기본 품질기준을 약정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비교적 간편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한 방식으로 물건의 품질기준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편이다.

규격이란 물건의 화학성분, 함량, 순도, 부피, 성능, 크기, 길이, 굵기 등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면 참깨의 규격을 정할 경우, 수분(최고) 8%, 잡질(최고)2%, 함유량(최저)52% 등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2) 물건의 등급을 정하는 방법

동일한 유형의 물건에 대하여 무역실무에서 그 품질, 무게, 주요성분, 외관 또는 사용효과 등 요소의 차이에 따라 문자, 숫자 또는 부호로 그 등급을 분류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품질의 차이를 두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냉동토끼 고기에 대한 등급을 정할 경우, ‘특급은 마리당 무게가 1,500g 이상이어야 하며, 상급은 마리당 무게가 1,000g 이상이어야 하고, 중급은 마리당 무게가 600g 이상, 하급은 마리당 무게가 400g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그 등급을 정할 수 있다.

(3) 물건의 표준(Standard)을 약정하는 방법

물건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규격, 등급 등에 대하여 표준화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일정한 서면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물건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표준화 전문기관, 정부, 산업협회, 물건거래소 등 단체들이 제정하고 공표하고 있다. 동일한 단체가 발표한 표준이라 하더라도 연도별로 서로 다른 버전의 표준이 있으며 표준의 구체적인 기준도 다르다. 따라서 계약에서 표준을 약정할 경

우, 표준을 제정한 단체, 표준의 구체적인 명칭, 표준의 버전, 표준이 발표된 연도 등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브랜드 또는 상표를 약정하는 방법

브랜드나 상표는 특정 물건의 품질, 규격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유명 브랜드나 상표를 사용하는 물건은 국제 시장에서 선호되는 제품으로, 품질이 안정적이고 매수자나 최종 소비자도 모두 잘 알고 있는 물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에서 특정 브랜드나 상표의 제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물건의 품질에 대한 약정을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동일한 브랜드나 상표에 여러 가지 규격, 모델명의 상품이 있는 경우, 당해 모델명이나 특정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매매계약에서 'BMW 760Li' 라고 지정하여 자동차의 상표와 모델명을 약정하는 방법이 있다.

(5) 원산지를 약정하는 방법

국제물건매매계약에서 원산지를 약정하는 방법은 주로 자연조건이나 전통적인 가공기법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품질약정을 할 경우 매수인이나 최종 소비자들이 잘 아는 특정품질의 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6년근 고려인삼' 이라는 표기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6) 설명서나 도면으로 약정하는 방법

기술 집약형의 경우, 간단한 문구로 그 품질을 전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건의 품질을 약정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서와 그에 따

른 도면이나 사진, 설계도, 분석표 및 기타 관련 데이터를 기재하여 구체적인 성능과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야 한다. 이런 방법은 주로 기계, 전기제품, 계량 장치 등 공업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이런 방식으로 품질을 약정할 경우,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조항과 기술서비스, A/S 등 약정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나. 실물의 방식으로 품질약정을 하는 경우

(1)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방법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매도인의 창고에 가서 직접 재고 물건을 검사하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매도인이 반드시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검사하였던 물건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검사하였던 물건으로 발송되면, 매수인은 당해 물건의 품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경매나 전시 판매 등의 한정된 경우에만 사용된다. 주로 보석, 그림, 조각품 등 특정된 물건의 경우에 사용된다.

(2) 샘플에 근거하여 약정하는 방법

5.4 본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은 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을에게 밀봉한 샘플 2세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합리적으로 변화할 때마다 상응하게 교환해야 한다. 당해 밀봉한 샘플은 품질분쟁이 발생할 경우 품질검사대조물로 사용할 수 있다. 밀봉한 샘플의 품질수준은 갑의 동일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증명 또는 대조 평가하는 작용을 한다.

샘플은 참고용 샘플과 표준 샘플로 분류된다.

① 참고용 샘플

참고용 샘플은 매매 쌍방이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 샘플을 발송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해하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용 샘플은 거래의 품질기준이 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참고용 샘플을 품질기준으로 오해하여, 그 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참고용 샘플을 송부할 때 반드시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과정의 품질 기준으로 적용 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② 표준 샘플

표준 샘플은 거래의 품질기준으로 되는 샘플을 말하며, 이러한 샘플은 매매 쌍방이 확인하였거나 매수인이 수령한 후에 거래의 품질근거로 되며, 매도인은 샘플과 동일한 품질의 물건을 납품할 의무를 갖게 된다.

③ 샘플을 통한 거래

국제거래에서 의류, 일부 경공업 제품, 광물 제품, 토산물 등 물건의 품질은 그 기준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의 경우에는 샘플을 품질기준으로 하는 거래가 종종 이루어진다. 그러나 단순히 샘플을 유일한 품질기준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일반적인 경우 샘플은 물건의 품질기준의 일부에 대한 근거로서 기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물건의 컬러에 대한 기준으로 샘플을 제공하여 ‘샘플의 컬러와 동일’이라는 문구로 컬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컬러를 제외한 물건의 기타 품질요건은 별도 서면으로 약정하게 된다.

④ 샘플의 보관

샘플에 근거한 거래를 할 경우, 샘플의 보관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샘플은 품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품질의 기준을 제공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샘플을 누가 보관하는지, 그 진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게 된다.

※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그 샘플을 밀폐 보관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매매 쌍방이 공동으로 공증기관에 위임하여 거래되는 물건에서 일정한 수량의 샘플을 추출한 후, 당해 샘플을 매매 쌍방이 확인하고, 공증기관이 이에 대한 공증을 하며, 각각의 샘플을 밀폐하여 쌍방이 모두 인정하는 위조방지 조치를 취하고, 공증기관과 매매 쌍방이 모두 샘플을 각자 보관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매 쌍방이 각자 보관한 샘플을 개봉하여 비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증기관에 보관한 샘플을 함께 개봉하여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3. 품질 오차의 범위

계약에서 품질기준을 정할 때 일정하게 오차범위를 두어 매도인이 납품하는 물건의 품질이 규정된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그 품질이 계약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품질 오차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의 오차범위를 규정하는 방법

일부 물건의 경우 그 품질기준을 제시한 후, 일정한 범위의 오차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약정할 수 있다. 예들 들면 ‘무게: 500g, $\pm 10g$ 허용’ 등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나. 오차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정하는 방법

일부 물건의 경우 그 품질에 대하여 허용되는 오차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대, 최다, 최고, 최소, 최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예를 들어 ‘오리 한 마리당 무게 최소 900g’ 으로 약정할 수 있다.

다. 공인된 품질오차를 약정하는 방법

공업제품은 생산과정에 제품에 일정한 오차가 발생하게 되며 오차의 크기가 그 품질의 우수성을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업제품은 국제적으로 또는 당해 산업영역에서 공인된 오차범위가 있으며, 이러한 공인된 오차범위의 물건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또는 산업영역에서 공인된 오차라 하더라도, 계약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국제적으로 또는 산업영역에서 공인된 오차의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쌍방이 계약에서 별도 약정한 경우, 물건의 품질이 계약에 정한 합리적인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물건의 수량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물건의 실제 품질에 따라 가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4. 품질 관련조항을 약정할 때 주의할 사항

국제물건매매계약에서 품질조항은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품질 관련 조항을 약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물건의 특성에 맞는 품질 약정방법 선택

품질 약정방법은 물건의 특성에 맞지 않게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면 문자로 품질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샘플에 근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 일부 물건의 특성상 반드시 문자로 설명하는 동시에 샘플에 근거하여 품질을 약정할 필요도 있는 경우, 매도인이 문자의 설명과 샘플의 품질에 모두 부합하는 물건을 제공하도록 매도인의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나. 품질조항의 내용

품질조항의 내용은 간단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야 한다. ‘대략’, ‘좌우’, ‘합리적인 오차’ 등 명확하지 않은 용어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허용되는 오차 범위 명확하게 약정

물건의 품질에 합리적인 오차가 존재할 경우,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를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사 례]

중국의 A회사는 싱가포르의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아동복을 수출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B회사 담당자는 A회사가 제공한 샘플을 검사한 후, 당해 샘플을 물건품질 기준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수출 계약서의 품질 관련 약정에서는 제품의 규격, 원단, 컬러 등 기본 내용만 간략하게 기재하였으며, 매수인은 물건을 수령한 후 30일 내에 물건의 품질을 검사하고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약정하였다. 물건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B회사는 ‘컬러가 정확하지 않으며, 재봉을 잘하지 않아 품질이 열악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싱가포르의 품질 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 증서를 발급받아, 물건 반송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A회사는 샘플을 품질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샘플은 싱가포르 B회사가 이미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회사는 계약서에 샘플을 품질기준으로 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샘플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A회사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샘플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다. 컬러 문제와 관련하여 A회사는 방직 품에서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컬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B회사는 품질 관련 약정에 물건의 컬러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보고와 관련하여, A회사는 B회사가 제출한 검사 보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B회사가 의뢰한 품질 검사 기구는 A의 사전 동의를 받은 기관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B회사는 계약서에 B가 품질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을 뿐 검사 기관에 대하여 약정한 적이 없으며, 품질기관을 의뢰할 경우 A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약정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A회사는 본 사건에 대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B회사를 반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없기에 패소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싱가포르 B회사와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낮추어 줄 것을 합의하였다.



[보충설명]

본 사건에서 A회사는 계약에 품질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B회사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의류의 경우 간단한 문자로 품질을 약정하게 되면 해석상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본 사건에서처럼 쌍방이 샘플을 품질의 기준으로 약정할 경우에는, 응당 품질조항에 샘플을 품질의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당해 샘플의 식별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한 후, 샘플을 공탁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방직품의 특성상 컬러의 합리적인 오차 범위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5. 물건의 포장

(1) 포장 표준

국제매매계약에서의 물건의 포장은 매도인 소재국과 매수인 소재국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관습이나 표준화 기구의 포장 표준 등에 따라야 한다.

※ 예를 들면 목재로 포장되는 물건의 경우, 포장재로 사용되는 목재에 대해서 각국은 비교적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다. 목재에 들어있을 벌레, 세균 등을 박멸하기 위하여 목재에 대하여 가열처리를 하거나 특정된 화학용액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계약상 규정

위와 같이 법률이나 국제 거래관습, 국제표준 등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포장의 방식, 포장재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포장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건의 특성, 운송방법 등에 따라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 포장비용

일반적으로 포장비용은 물건 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며 별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수인이 포장에 대하여 특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포장비용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일부 물건의 경우, 포장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어떻게 지불할지 등을 계약에 명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V. 납품기간과 인도방식

3.6 주문서에 별도의 설명 혹은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납품기간은 일반적으로 을이 당해 제품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35일 내로 한다. 주문서에 별도의 설명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납품방식은 FOB(한국 인천항)이고 운송방식은 해상운송으로 한다. 포장은 을이 요구하는 일반 포장 방식으로 하며 보험은 을이 책임진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어느 시점까지 납품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납품의 시점은 매매하는 물건의 특성에 따라, 매도인이 물건을 준비하는 기간, 물건의 납품기간에 대한 매수인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국제물건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방식도 중요한 조항이다. 인도방식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교부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계약에 약정한 인도방식으로 물건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면, 그 시점부터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물건 손실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인도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제물건매매계약의 인도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납품방식 및 물건 가격에 운송료와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국제적으로 특정 무역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제 무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무역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인도조건(EXW)

매도인이 자신의 작업장 구내에서 물건을 인도하는 것으로, 작업장, 공장, 창고, 농장, 광산, 판매장 등을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물류비 및 기타 비용의 부담이 전혀 없고, 부담하는 위험도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매도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이 조건의 한계점은 현실적으로 매수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매도인의 물건이 월등하고, 계약적인 지위가 거의 매도인 일방주도의 경우에만 가능한 조건이라는 점이다.

2. 운송인 인도조건(FCA)

수출국 내의 지정 지점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선측인도가격조건(FAS)

매도인이 수출통관 된 물건을 선적항의 선박 옆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4. 본선인도조건(FOB)

선적항에서 선박의 갑판 상에 물건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물건이 선박의 본선에 적재되면 인도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이후 물건에 대한 비용과 위험 부담은 모두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5. 운임포함조건(CFR)

FOB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에 적재하여 물건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은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6.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

역시 FOB와 같이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에 적재하여 물건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7. 부도인도조건(DEQ)

수입국의 목적항의 부두 상에서 물건을 인도하되 목적항에서의 수입통관 미필 상태로 인도하는 경우이다.

8. 관세미지급인도조건(DDU)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은 채, 수입국 내의 지정목적지까지 물건을 반입하여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수입통관을 마치고, 수입국 내의 지정 목적지까지 물건을 반입하여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VI. 품질검사 기간과 방식

3.8 화물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을은 화물이 을의 주문서에 기재한 목적지에 도착한 후 10일 내에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품질검사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품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3.9 을은 품질검사서에서 화물의 품질이 을의 주문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은 화물이 을의 주문서에 확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후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당해 기한을 초과한 경우 을은 품질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제물건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계약에 약정된 방식으로 물건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물건의 품질이 계약에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물건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심지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1. 품질검사 기간

품질검사의 기간, 즉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품질검사를 시작하는 시점과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시작 시점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출하하는 시점에 검사하는 방법, 선적하기 전에 검사하는 방법, 선적하면서 검사하는 방법, 하역을 하면서 검사하는 방법, 매수인이 지정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건의 표면에 드러난 하자는 쉽게 검사할 수 있지만 물건 내부의 드러나지 않는 하자는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내부의 드러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그 특성에 따라 클레임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야 한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중국 계약법은 이러한 내부 하자에 대해서 그 클레임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품질검사방법

(1) 품질검사인

매수인은 품질을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직접 검사하는 방법, 매수인의 대리인이 검사하는 방법,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

로 검사하는 방법,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지정한 제3의 품질검사 기관이 검사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검사방법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품질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경우의 통상적인 검사방법은 물건의 유형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의 경우 실제 가동하여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의자 같은 가구의 경우는 외관상 하자 유무 검사와, 앉아보거나 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하여 쉽게 검사할 수 있다.

VII. 물건대금의 결산

4. 가격과 대금결산

- 4.1 결산의 편의를 위하여 주문서를 확정된 후 7일 내에 을은 갑이 지정한 계좌에 주문서에 약정한 화물대금의 50%를 선불금으로 입금한다. 또한 선불금을 지급한 후로부터 15일 내에 나머지 50% 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을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주문서를 철회하거나 기타 위약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해 선불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한다. 선불금으로 위약금을 전부 지불할 수 없거나 갑의 손실을 전액 배상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전액을 배상할 때까지 갑에게 계속 배상해야 한다.
- 4.2 본 계약에 따라 발송하고 확인한 주문서의 가격(단가와 총가격을 포함)은 당해 주문서에 별도의 약정 혹은 설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FOB(한국 인천항)가격이다.

- 4.3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제품 가격이 동등한 조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보장한다.
- 4.4 갑은 제품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을이 당해 변동가격 적용을 희망할 경우, 15일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5 화물대금의 지불은 선불금을 T/T방식으로 지불하는 외에 기타 금액은 L/C로 지불한다. 당해 L/C는 취소불능의, 명백한 화환신용장이어야 한다.
- 4.6 쌍방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모든 주문서에 대한 가격단위와 지불 화폐는 모두 미화로 한다. 을은 화물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의 외환 환전과 외환 송금문제를 자기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 4.7 본 계약에 따른 주문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을이 전부 부담한다.
- 4.8 을은 대금지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물건매매계약은 물건의 국제간 거래이기 때문에 물건대금의 결산에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요컨대 물건대금의 결산은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재한 양국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결산방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물건대금의 결산방식에 근거하여 물건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약정할 필요가 있다. 물건대금의 주된 결산방식들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장(L/C) 방식

신용장 결산방식은 은행의 신용으로 국제물건매매 결산을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신용장은 은행이 신용장에 기재한 조건부로 대금지급을 승낙하는 지불각서이다. 즉, 은행은 신용장 개설 신청인(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익자(일반적으로 매도인)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신용장에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급을 해주겠다는 서면 승낙이다.

이 경우에 수익자가 신용장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으려면, 신용장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그러한 증빙서류를 전부 구비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관련 서류를 완전하게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준비한 서류가 신용장의 기재와 다른 경우, 은행이 지급 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

2. 은행 송금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일방이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상대방에게 송금을 하는 결산방식이다. 은행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인과 수금인 측 양쪽에서 모두 외환 환전 등 외환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송금방식으로는 전신환 송금(T/T), 우편환 송금(M/T), 송금수표에 의한 송금(D/D) 등의 방법이 있다. 국제무역거래에서는 T/T 송금의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은행송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송금 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수령하고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에 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선호하며,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건을 납품하기 전에 계약금이나 선수금 형태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특히 중국의 거래 상대방의 신용에 대하여 불안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납품을 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높은 비율의 대금을 받아야만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매수인의 신용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하기

전에 50% 정도의 선수금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납품을 하기 전에 대금의 100% 모두를 선수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매수인이 이러한 결산 방법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실적인 방안이라 볼 수 없다.

한국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납품을 하기 전에 대금을 받지 않거나, 너무 낮은 비율의 대금을 선수금이나 계약금으로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그러므로 중국 측 거래 상대방의 신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 측이 ‘납품 후에 전부 대금 또는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할 경우에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3. 위탁수금

매도인은 물건 선적 후에 매도인의 소재지 은행에 위임하여, 당해 은행이 매수인 소재지에 설립한 지점이나 매수인 소재지의 제휴은행을 통하여 매수인으로 부터 대금을 받아, 당해 대금을 매도인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위탁수금의 방식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현재 국제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다.

VIII. 계약을 위반할 경우의 위약책임

8. 위약 책임

8.1 상대방의 서면 동의로 면제를 받거나 본 계약서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라도 본 계약에서 약정한 승낙, 보장, 의무 혹은 책임(본 조에서 “의무”라 통칭한다.)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8.2 갑, 을 양 측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계약의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요구를 통지 받은 자가 제 때에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요구를 한 일방은 자체적으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지출은 위약을 한 일방이 전액을 부담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준수한 일방은 쌍방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통지절차를 취하지 않고 직접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지출은 위약을 한 일방이 전액 부담한다.
- 8.3 위약한 측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본 계약에서 어떠한 위약 사건이 발생하면 위약한 측은 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각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산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기타 가지급금, 추징관세와 가산세, 직접적인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 연체료 및 제3자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하며,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8.4 임의의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배상하는 외에, 위약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 금액은 미화 ()불로 한다.
- 8.5 상기 조항의 약정은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은 일방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쌍방이 본 계약서에 따라 확정된 주문서에서 별도로 보충한 약정 혹은 여러가지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장애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 8.6 일방이 특정한 경우에 상대방의 위약행위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할 경우, 기타 상황에서도 위약자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는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물건매매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위약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매매계약에서 위약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방안으로는 손해배상, 위약금 지불, 계약 해지 등의 방법이 있다.

1.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일방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위반한 일방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약정할 경우 제일 중요한 점은 손해 발생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다. 물건의 유형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따라 손해발생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참조하여 명확하게 약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손해 금액 산정 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확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계약위반행위가 발생한 후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일방에 대한 페널티의 성격이 강하며, 손해 발생 측의 손실을 일부 보충해주는 역할도 갖고 있다.

주의할 점은, 중국법상 위약금은 페널티의 성격보다는 손해배상을 보충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 피고가 위약금을 조절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실제 발생 손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약금을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법원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을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높게 책정된 위약금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의하여 하향조절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계약 해지

9. 계약의 사전 해지

9.1 본 조에서 약정한 해지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해서라도 사전에 해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9.2 본 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갑,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해지할 수 있다.

9.3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의 정상 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은 합리적인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을이 규정한 기간 내에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갑이 독촉을 하였음에도 5일 내에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b) 을이 갑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한 신용장이 본 계약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갑이 독촉을 하였음에도 10일 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한 신용장이 본 계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9.4 본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일방적으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의 정상 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은 합리적인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a) 갑이 납품한 제품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대량의 컴플레인(불만)이 들어왔거나 심각한 품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신체 손해배상사고 및/혹은 재산손해사고)
- b) 갑이 30일 이상 제품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10.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의 사후처리

10.1 본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 혹은 해지될 경우, 을은 제품의 판매를 정지해

야 하고 갑은 최초의 가격대로 계산하여 을의 재고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만약 갑이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 종료 혹은 해지 후로부터 3개월 내에 잔고제품을 계속 판매하여 재고를 처리할 수 있다.

10.2 본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의 제4, 5, 8, 11, 13조와 제14조는 계속 유효하다.

10.3 본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갑, 을 쌍방은 10일 내에 1회에 모든 화물대금 및 기타 거래비용에 대한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심각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무의미 한 경우, 또는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계약의 이행이 쌍방에 대하여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일정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신중하게 약정해야 한다.

(1) 합의해지

계약해지는 쌍방의 합의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계약의 이행이 쌍방에 대하여 실익이 없게 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2) 일방해지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심각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계약을 준수한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약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약정은 쌍방에 대하여 모두 일정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일방은 계약해지를 한 경우에도 계약을 위반한 일방에게 손해배상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IX. 계약의 분쟁 해결 방법²⁾

13. 분쟁의 해결

갑, 을 쌍방은 본 계약의 내용, 해석, 효력의 발생, 효력 및 이행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우선 우호적으로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일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30일 내에 협상으로 결과를 보지 못한 경우, 임의의 일방은 한국 서울시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당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분쟁의 각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쟁해결의 방법은 크게 협상을 통하여 합의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소송이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법이 있다.

²⁾ 이 부분은 제3장 '중국에서의 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조

1. 합의에 의한 해결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상대방과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협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도 비교적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나 중재는 모든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인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일방이 상대방에게 분쟁의 사실관계를 통지하고, 당해 분쟁사실에 대한 협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대방이 협상에 동의하면 협상안에 기초하여 일부 수정, 보완을 통해 쌍방이 만족하는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상을 개시한 후에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이나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소송 및 중재를 통한 해결

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중재란 쌍방이 공동으로 사전에 지정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기관으로부터 중재판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을 동원한 공권력 활동인 데 반해, 중재는 민간 또는 半官半民 성격의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중재는 그 절차가 소송에 비해 간편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송이나 중재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자가 중재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중재를 제기할 수 없다.

(2) 소송에 대한 배척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는 소송에 우선하며, 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중재조항에 약정한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해야 한다.

(3) 법원판결과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

중국과 한국 간에는 상호간에 법원 판결을 집행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판결을 갖고 중국에 가서 집행을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중국에서 받은 판결을 갖고 한국에 와서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에는 중국정부와 한국정부는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국제 협약인 '뉴욕협약'에 모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해 협약에 따라 상호 간에 중재판정을 승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제물건매매계약에서 분쟁의 해결방식은 판결이 아닌 중재를 통하는 것이 차후 집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4) 보전처분의 가능성

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중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보전처분 후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위 보전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중국 중재기관에 중재시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 중재제기 전에는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고 중재신청후 별도로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 한 외국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보전처분이 불가능하다.

X. 기타 사항

국제물건매매계약에 포함해야 할 기타 조항에는 준거법의 선택, 계약에 적용되는 언어와 문자 등의 내용이 있다.

1. 준거법의 선택

14. 준거법

본 계약의 체결, 교부, 효력의 발생, 이행, 변경, 중지 및 해석 등은 모두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 관습을 적용한다.

준거법이란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이행 등에 근거로 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거법의 선택도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한국법상 국제물건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거래의 특성, 당사자들의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측 당사자인 경우는 한국 법을 준거법으로, 중국 측 당사자인 경우는 중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기를 희망한다. 준거법을 특정 국가 법률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계약지위에 따라 우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 만약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당해 분쟁을 중국법원에서 재판 받을 경우, 중국법원은 당해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하게 된다. 물론, 법원이 임의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지정하게 된다. 중국의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의 특성 및 어느 당사자가 이행하는 의무가 계약의 본질적 특성을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는지 등 요소에 근거하여 계약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확정한다.

일반적인 사법실무에서 국제물건매매계약의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소재지 법률을 적용하며, 만약 계약이 매수인 소재지에서 협상 및 체결 되었거나, 계약에서 매도인이 반드시 매수인의 주소지에 와서 인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인 주소지 법률을 적용한다. 단, 대형 설비의 경우 설비매매계약은 설비 설치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주의할 점은, 중국의 사법실무에서 위와 같은 준거법 선택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중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준거법을 중국 법으로 정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준거법을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약에 적용되는 언어와 문자

15.3 본 계약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한다. 한국어 계약은 1식 2부로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각 1부를 보관하고, 중국어 계약은 1식 2부로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각 언어의 계약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의미가 상충하는 경우, 한국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물건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 간에 체결되기 때문에, 각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경우, 국제물건매매계약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약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실무에서 중국과 한국 당사자 간에 국제물건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국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두 언어로 된 계약서의 해석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중의 한 가지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지위에 따라, 우위에 있는 당사자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3. 기타 주의사항

중국 업체들과의 매매거래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들 때문에 일정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앞에 언급한 매매계약의 필수사항들을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영역의 중국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측 상대방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법률개념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제안을 할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를 해야 하며, 상대방이 제안하는 이익에 현혹되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제물건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무역보험을 가입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을 받아 손실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2장 국제물건매매계약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의 보호

중국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 외국기업들은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에서 크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부분은 중국의 경제 환경 중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법률의 집행 과정에 일부 허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부분 가입한 상태이며, 국내법의 관련 법령도 제정되어 있다.

한국 업체가 매도인으로, 중국 업체가 매수인으로 되어 중국에 한국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국제물건매매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 물건의 지적재산권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계약에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건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맞는지, 물건의 매매행위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물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등을 약정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계약에서의 이러한 약정이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침해를 당하거나, 무의식 간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고발을 당하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 업체의 모방제조기술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짝퉁제품의 피해를 보는 외국 업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짝퉁제품은 외국 업체가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또한 중국의 업체나, 기타 외국 업체가 한국 업체 제품과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특허 등을 사용하고, 한국 업체와 동시에 중국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한국 업체와 이런 업체 간

에도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짝퉁제품의 피해를 보거나 지적재산권 관련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업체가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등록, 관리 등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피해가 늘어나거나, 기타 업체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고발, 소송 등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하 중국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 많이 접하게 되는 상표권과 특허권 관련 제도에 대하여 요약 설명한다.

I. 상표권 보호에서 주의할 점

중국 업체와 거래할 경우 중국 상표법의 상표등록,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보호, 상표사용과정의 관리 등 제도적인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표 권리를 보호받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보호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상표사용에서 주의할 점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표사용자가 정할 수 있으며 문자, 그림, 알파벳, 숫자, 3차원 표시 및 색감의 조합으로 상표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표시는 상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중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중앙정부 기관 소재지 특정 장소의 명칭 또는 그 건축물의 명칭, 모양과 동일한 경우
- b.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그러나 당해 국가 정부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

- c. 정부 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표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그러나 당해 국제조직이 동의하거나 대중들이 오인할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는 제외
- d. 실제 통제하고 있거나 보증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표시, 검사필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그러나 권한위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e. 적십자, 적신월 등의 명칭, 표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f. 민족 차별을 나타내는 경우
- g. 과대 홍보 및 사기성을 띄는 경우
- h. 사회도덕에 해를 주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을 주는 경우

2. 상표권 등록에서 주의할 점

가. 상표권 등록 관할 기관

〈상표법〉에 의하면,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 리총국 산하의 상표 국이다.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표권 등록을 관할할 수 없다.

나. 등록상표로 될 수 없는 상표

다음의 상표는 등록상표로 될 수 없다.

- a.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 그림, 모델명
- b.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표시한 경우
- c. 현저한 특징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상표들이 사용을 통하여 현저한 특징을 갖게 되고, 식별이 간편하게 되는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사 례]

1999년 대만의 기업가 왕 씨는 중국 샤먼에 회사를 설립하고 ‘我家’라는 상호로 커피숍 체인점을 경영하였다. 그 당시 왕 씨는 회사의 상호등록만 하였을 뿐 ‘我家’라는 상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후 커피숍 체인점 경영이 성공을 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자 기타 기업들이 ‘我家’ 스낵, ‘我家’ 아이스크림 등 유사한 점포를 개설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식품포장, 식기 등 상품에 대한 ‘我家’ 상표 등록도 하였다. 그 외에도 유리제품공장, 도자기 제품공장, 종이제품 공장 등도 각각의 제품에 ‘我家’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我家’ 상표를 등록한 기업들은 왕 씨에게 커피숍 상호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나 식기, 커피 잔 등에 ‘我家’라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왕 씨의 ‘我家’ 커피숍은 점포에서 사용하는 유리그릇, 금속 식기, 도자기 식기, 커피 잔 등에도 ‘我家’라고 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왕 씨는 이런 기업들과 협의하여 상표권을 사오려고 하였으나, 상표권을 가진 기업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바람에 상표권 구매를 포기하였다. ‘我家’ 상표가 타인에 의하여 등록되는 사건을 통하여 왕 씨는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我家’ 상호를 포기하고 새로운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왕 씨는 ‘我家’ 상표와 발음이 비슷한 ‘我佳’ 상호로 회사등록을 변경하고 유리제품, 금속제품, 종이제품 등 전반 영역에 대하여 ‘我佳’ 상표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인터넷 도메인, 서비스 등 파생영역에 대한 등록도 진행하여 기업의 경영 과정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의 상표와 상호가 타인에 의하여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왕 씨가 제때에 구제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왕 씨의 기업은 계속 안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충 설명]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 업체와 국제거래

를 할 경우 제품과 서비스의 상표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표를 먼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당해 상표에 대한 배타적인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타인이 허점을 파고들어 먼저 상표출원을 한 경우, 원래의 상표권자는 당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외국 업체들은 중국과 일정 기간 거래를 해보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때에 상표등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기 전에 타인에 의하여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의 상표권자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울인 심혈이 헛된 것으로 될 수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먼저 상표등록을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등록상표 침해행위

가. 등록상표 침해의 경우

등록상표는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며, 다음의 경우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a. 등록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b.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c.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 d.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당해 변경한 상표의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 e. 타인의 등록상표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경우

나. 등록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우선 침해자와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침해자가 협상을 원치 않거나 침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상표권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권리 침해자가 행정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권리 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여 권리 침해자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1) 민사소송에서의 상표권 침해 배상금 기준

상표권 침해로 인한 배상금의 범위는 상표권 침해자가 권리침해 기간 내에 상표권 침해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권리침해의 피해자가 권리침해 기간 내에 권리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말하며, 여기에는 피해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만약 권리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또는 피해자의 손실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권리침해 행위의 정도에 따라 50만RMB 이하의 배상 금액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 상품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이러한 상품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고 상품을 제공한 자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행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

상표권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의 상표국 및 각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의 상표사건 처리기관이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권리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 상품과 권리침해 상품 제작, 등록상표 위조에 사용되는 도구를 몰수, 소각하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리결정을 이행하지도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표권 침해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중재자의 신분으로 상표권자와 상표권 침해자 간의 상표권침해 배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당사자 간에 권리침해로 인한 배상 금액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을 뿐, 직접 배상 금액을 판정할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당사자 간에 배상 금액 확정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형사처분의 가능성

상표 권리를 침해하여 그 정상이 중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분을 받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b.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임의 제작하거나, 이러한 위조, 임의 제작된 상표를 판매하는 행위
- c.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의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배상책임도 함께 부담한다.

(4)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 주의할 점

타 기업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방법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상표권 보호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선 상표권 침해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상표권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구와 주방용품은 동일한 상표 품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에 상표를 등록하였다 하여 주방용품에도 당연히 그 상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타인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지도 주의하여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타인이 당해 물건에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 상표의 등록을 한 것이 있는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고의가 아니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사례]

한국의 모 스포츠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자체 상표로 한국 내에서 이미 상당한 브랜드가치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중국의 제조공장과 제휴를 하여 OEM방식으로 제품을 주문생산하고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를 해왔다. 그러나 중국에서 당해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동일한 유형의 스포츠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미국업체도 당해 한국 업체와 거의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미국업체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였다. 한국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OEM 제작을 하여 물건이 중국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 미국회사는 당해 제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통관을 막아줄 것을 중국 세관에 요청하였다. 중국세관은 미국회사가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였기에 당해 상표의 상표권자는 미국회사이며, 한국회사 제품은 미국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통관을 불허하고 당해 제품을 전부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보충설명]

중국에서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중국에서 이미 타인에 의하여 등록된 것인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한 후, 중국 세관에 등록상표 세관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통관하는 물건이 세관에 등기된 상표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상표침해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상표권자에게 통지하여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중국 세관의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상표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제3장 국제물건매매계약의 분쟁해결

중국의 사법제도는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중국은 완전한 사법독립이 확립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지역에 따라 판사들의 수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국제물건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국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소송은 중국법상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 이하 중국의 민사소송제도, 민·상사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I. 중국 법원의 체계와 소송제도

중국에서 민사소송을 하든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든, 법원의 체계와 소송의 기본적인 제도는 동일한 것이며, 중국의 사법제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중국 법원의 체계와 소송의 기본 제도를 살펴본다.

1. 중국 법원의 체계

중국은 법원의 체계에 있어서 비교적 특수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 법원의 체계와 법원의 급별 설정에 있어서 행정지역 및 행정기관의 설정과 동일한 체계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행정기관은 크게 중앙정부 → 省級 정부(여기에는 자치구와 직할시도 포함) → 地級市³⁾ 정부·직할시의 구청 → 縣級 市청, 지급 시, 구청 등의 순으로 설정되어 있다.⁴⁾ 법원도 각 행정구역 별로 설치되어 있고, 행정기관 級別과 동일한 순으로 최고인민법원 → 고급인민법원 → 중급인민법원 → 기층법원 등 네 개의 등급으로 설치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원 설치에 따라, 기층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급법원에 상소하고, 중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급법원에 상소하며, 고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고법원에 상소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외에도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중국은 해상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독특한 사법시스템이다. 해사법원은 해상 관련 소송을 관할하며 국제무역 과정의 해상사건도 해사법원 관할이다. 해사법원은 중급법원과 동등한 직급으로,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동부 연해 지역의 해상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항구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³⁾ 중국의 地級市는 한국의 광역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비교적 큰 범위의 행정구역을 가지며, 그 소속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縣級市 또는 區를 가진다. 중국의 행정지역에서 직할시 또는 地級市만이 區를 둘 수 있다. 직할시는 성급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직할시의 구청은 지급 시 시청과 동일한 행정 등급이며, 직할시 구청은 현급 시 시청과 동급이다.

⁴⁾ 시 정부 이하 鄉·鎮(한국의 군, 리 등에 해당) 등 행정지역도 있지만, 본 항목의 내용과 큰 관련이 없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2. 중국의 기본 소송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법원 체계는 총 4개 등급의 법원이 있으나, 소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고법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소송의 주기를 단축한다는 이유로 2심 종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소송은 2번의 재판으로 모두 종료되는 것이다. 기층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모두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직급에 상응하는 1심 소송사건을 관할하며, 1심 관할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시에는 한 번의 상소 기회가 있다. 상소는 1심 관할법원의 직상급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이 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최고인민법원이 1심 관할 법원인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1심 판결은 최종 판결이 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규모가 매우 큰 소송사건의 경우 고급인민법원이 1심 관할법원으로 된다.

Ⅱ. 중국의 민사소송제도

1. 민사소송의 급별 관할

중국의 민사소송체계는 한국과 달리 소송가액의 규모 또는 소송의 중요 정도 등에 따라 그 1심 사건을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중국의 민사소송법에는 한국에는 없는 독특한 급별 관할체계가 있다.

가. 실무에서의 1심사건 관할의 구체적 규정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원칙적인 수준의 규정으로, 실무에서는 각 지역의 고급인민법원에서 현지 실정에 맞추어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의 1심사건 급별

관할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작성하며, 최고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가액,涉外사건 여부 등에 따라 관할 급별을 구분하고 있다.

국제물건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물건매매계약 관련 분쟁은 일단涉外사건이기 때문에 각 지역 법원에서 정한 관할권 배분 규정에 따라,涉外사건 관할권 배분에 의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북경시의 경우	소송가액	1심법원
민사涉外사건	50만RMB 미만	기층법원
	50만RMB 이상 8천만RMB 미만	중급인민법원
	8천만RMB 이상	고급인민법원
상사涉外사건	500만RMB 미만	기층법원
	50만RMB 이상 8천만RMB 미만	중급인민법원
	8천만RMB 이상	고급인민법원

2. 민사소송의 지역별 관할

중국 민사소송법은 분쟁을 관할하는 지역별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법에서 정한 관할지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중국 민사소송법은 피고 주소지 법원 관할의 원칙하에, 경우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에서 관할하는 사건, 계약관련 분쟁 사건, 권리침해 관련 사건, 해상 사건 등 특별한 경우를 나누어 지역관할의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주소지 법원 관할의 원칙

중국의 민사소송법에서는 별도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 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피고가 자연인인 경우,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며, 피고의 주소지와 일상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 (2)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피고로 되는 경우, 피고 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 (3) 동일한 소송에 다수의 피고가 있으며, 그 주소지나 거주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있는 경우, 각각의 지역의 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갖는다.

나. 국제물건매매계약 관련 분쟁 소송에서 주의할 점

중국 민사소송법은 계약자유 원칙을 존중하여, 계약 관련 분쟁의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관할법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물건매매계약의 경우에도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다. 계약분쟁 관련 소송은 다음과 같이 관할지역 범위에 따라 당사자들이 법원을 선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피고 주소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주소지, 목적물소재지 등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관할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중국법상 법원의 전속관할이나 급별 관할 등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의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들이 관할법원을 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외국법원의 판결을 중국 법원이 승인, 집행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피고가 있어 중국에서 집행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외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 중국 업체가 피고가 되어 중국에서 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법원을 지정하거나 되도록이면 중재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다.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

다음의 사건은 당사자가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없고, 반드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해야 한다.

- (1) 부동산 분쟁 관련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 (2) 항구 작업과정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항구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만약 항구 소재지에 해사법원이 있는 경우 당해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 (3) 유산상속 분쟁 관련 소송은 피상속인 사망 시 주소지, 또는 주요 자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3.涉外소송에 관한 특별규정

중국의 민사소송법상涉外소송은 내국인 간의 소송과 다른 일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가. 중국에 주소지가 없는 피고의 경우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만약 계약이 중국 내에서 체결되었거나 이행된 경우 또는 소송의 목적물이 중국 경내에 있는 경우, 피고가 중국 내에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피고가 중국 경내에 대표처를 설립한 경우, 모두 당해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 목적물 소재지, 압류 가능한 재산 소재지,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대표처 소재지 법원으로 된다.

나. 상소 기간에 관한 규정

내국인 간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15일 내에, 1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내에 상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涉外소송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모두 30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소송기간에 관한 규정

내국인 간의 소송인 경우, 1심 판결은 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2심 판결은 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涉外소송사건인 경우 이러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涉外사건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을 모두 종료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다.

Ⅲ. 중재 시 주의 사항

중국은 민사소송제도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등 법률에 의하여 민·상사 중재제도도 확립하고 있으며, 국제물건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기관은 중국에 있는 중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고, 외국의 중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만약 중국 국내에 있는 중재기관을 지정하여 중국에서 중재를 할 경우, 실무에서 주의할 몇 가지 문제점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1. 중재합의 우선의 원칙

중국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쌍방은 서면으로 중재에 관한 합의를 해야 하며, 중재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를 할 수 없다. 또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당해 합의가 법원 관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중재합의를 한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중재합의는 기본 계약에서 중재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이 협상하여 중재에 관한 합의를 할 수도 있다.

※ 주의할 점은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받을지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중재합의가 무효인 것으로 보며,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실무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간과하여 중재합의가 무효로 판정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중재는 북경의 중재기관에서 한다.’는 형식의 문구는 중재위원회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

왔기 때문에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재는 북경에 위치한 북경시 중재위원회에서 당해 중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고 명확하게 약정할 필요가 있다.

2. 일방이 법원에 소송한 경우

(1) 중재합의 포기 간주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법원에 중재합의 사실을 숨기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소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은 법원이 첫 번째 재판을 하기 전에 중재합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첫 번째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중재합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사건을 심리한다.

(2) 관할권 이의

국제물건매매계약에서 중재합의를 하여 중재기관에서 중재로 분쟁해결을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만약 중국 업체가 중국 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절대 이에 응소하지 말고, 중국법원이 첫 번째 재판을 개시하기 전에 법원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며, 한국 업체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3. 중재재결의 취소

중재재결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재결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법원에 중재재결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나. 중재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에 중재권한이 없는 경우

다. 중재부의 구성 도는 중재의 절차가 법률절차를 위반한 경우

라. 중재 재결의 근거로 되고 있는 근거가 위조된 것인 경우

마. 당사자 일방이 공정한 재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한 경우

바. 중재위원이 뇌물을 받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중재 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원에서 중재재결이 사회 공공이익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결은 취소될 수 있다.

4. 중재 재결의 강제집행

당사자가 중재재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가지는 일방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재결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 신청은 민사소송법상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IV.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물건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에 있는 중재기관을 선정하여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외국의 중재기관을 선정하여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외국의 중재기관으로부터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이것을 중국법원에서 승인하고 집행을 주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되고 있다.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중국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집행을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실무에서도 이러한 방침이 비교적 잘 집행되고 있었다.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을 중국법원에서 승인받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재지 또는 집행을 해야 하는 목적물의 소재지인 중급인민법원에 외국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을 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중급인민법원에서 외국중재기관의 판정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호혜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그 승인과 집행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직상 급의 법원인 고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 받도록 한다. 만약 고급인민법원에서도 승인과 집행을 거절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반드시 심사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이 당해 중재판정을 검토하고, 승인과 집행을 거절한다는 답변을 한 후에 승인과 집행을 거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최고인민법원에서 당해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이 난 경우,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외국의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해 주어야 한다. 또한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할 경우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수사정

이 없는 한 결정을 내린 후 6개월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승인과 집행을 거절할 경우 ‘외국중재판정 사법해석’에 따라 수리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최고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2편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작성시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결하시는 계약의 종류와 형태에 따른
수정이 필요합니다.

1. 매매계약서

갑:	(매도인)
법인대표:	직 위:
법정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을:	(매수인)
법인대표:	직 위:
법정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언

갑, 을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을이 갑의 _____제품(이하 '제품')을 구매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의 약정을 하였으며, 쌍방은 본 계약의 모든 조항과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 집행할 것이다.

본문

1. 갑의 진술과 보증

갑은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보증을 하는 바이다.

1.1 갑은 모든 법적권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위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미 모든 충분하고 필요한 위임을 받은 상태이고,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따라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1.2 본 계약에서 갑이 승낙한 모든 사항과 의무는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1.3 갑은 본국의 법률 하에서 본 계약에서 규정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은 갑이 현재 또는 향후에 기타 계약, 협의에서 약정한 의무와 충돌이 없을 것이며, 갑과 관련된 사법재판, 법원의 명령 등과 충돌이 없을 것이다.

2. 을의 진술과 보증

을은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보증을 하는 바이다.

2.1 을은 모든 법적권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위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모든 충분하고 필요한 위임을 받은 상태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따라 완전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2.2 본 계약에서 을이 승낙한 모든 사항과 의무는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2.3 을은 본국의 법률 하에서 본 계약에서 규정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은 을이 현재 또는 이후에 기타 계약, 협의에서 약정한 의무와 충돌이 없을 것이며, 을과 관련된 사법재판, 법원의 명령 등과 충돌이 없을 것이다.

3. 제품의 주문과 납품 절차

3.1 쌍방이 본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 간의 구체적인 거래 및 거래의 조건은 쌍방 간에 확인한 주문서에 의하여 확정된다. 주문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확정하지 않은 부분은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 3.2 을이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주문서를 발송하며, 갑은 주문서를 받은 후 10일 내에 서면으로 주문서의 내용에 따라 제품을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한다. 을이 갑에게 발송한 주문서는 갑의 서면 확인을 받기 전에 철회 가능하다.
- 3.3 갑이 을의 주문서에 따라 제품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을이 갑의 서면확인을 받은 날에 주문서가 정식 확정된 것으로 한다. 주문서가 확정된 후 을은 그 어떤 이유로든 주문서를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 3.4 갑이 주문서에 대하여 수정요구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을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서면 수정요구를 받은 후 갑에게 새로운 주문서를 발송한다. 을이 주문서를 발송하고 갑이 주문서를 수정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갑이 최종 주문서를 확인할 때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의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 3.5 주문서에는 제품의 종류와 규격, 가격(총 가격과 단가, 할인금액 등을 포함), 수량, 납품기간, 보험에 대한 요구, 포장에 대한 요구, 납품의 목적지 및 특수한 운송방식 등의 요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 3.6 주문서에 별도의 설명 혹은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납품기간은 일반적으로 을이 당해 제품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35일 내로 한다. 주문서에 별도의 설명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납품방식은 FOB(한국 인천항)이고 운송방식은 해상운송으로 한다. 포장은 을이 요구하는 일반 포장 방식으로 하며 보험은 을이 책임진다.
- 3.7 갑은 자체의 비용으로 제품을 한국에서 수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속을 한다. 을은 자체의 비용으로, 갑이 제공하는 유효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중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속을 한다.
- 3.8 화물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을은 화물이 을의 주문서에 기재한 목적지에 도착한 후 10일 내에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품질검사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품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3.9 을은 품질검사에서 화물의 품질이 을의 주문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은 화물이 을의 주문서에 확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후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당해 기한을 초과한 경우 을은 품질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가격과 대금결산

- 4.1 결산의 편의를 위하여 주문서를 확정된 후 7일 내에 을은 갑이 지정한 계좌에 주문서에 약정한 화물대금의 50%를 선불금으로 입금한다. 또한 선불금을 지급한 후로부터 15일 내에 나머지 50% 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을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주문서를 철회하거나 기타 위약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해 선불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한다. 선불금으로 위약금을 전부 지불할 수 없거나 갑의 손실을 전액 배상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전액을 배상할 때까지 갑에게 계속 배상해야 한다.
- 4.2 본 계약에 따라 발송하고 확인한 주문서의 가격(단가와 총가격을 포함)은 당해 주문서에 별도의 약정 혹은 설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FOB(한국 인천항)가격이다.
- 4.3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제품 가격이 동등한 조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보장한다.
- 4.4 갑은 제품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을이 당해 변동가격 적용을 희망할 경우, 15일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5 화물대금의 지불은 선불금을 T/T방식으로 지불하는 외에 기타 금액은 L/C로 지불한다. 당해 L/C는 취소불능의, 명백한 화환신용장이어야 한다.
- 4.6 쌍방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모든 주문서에 대한 가격단위와 지불화폐는 모두 미화로 한다. 을은 화물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의 외환 환전과 외환 송금문제를 자기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 4.7 본 계약에 따른 주문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을이 전부 부담한다.
- 4.8 을은 대금지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품질보장과 제품의 하자

- 5.1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 5.2 다음의 경우, 당해 제품은 납품 품질 불합격으로 본다.

- a) 수량 부족하며, 규정된 오차범위를 초과할 경우
- b) 화물의 품질이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c) 한국정부 소속의 품질검증기구 또는 중국정부 소속의 품질검증기구에서 증명한, 화물이나 그 기술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경우

- 5.3 갑은 갑이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본 제품의 품질이 중국 법률과 중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강제적인 품질기준, 안전기준과 기타 기준에 부합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5.4 본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은 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을에게 밀봉한 샘플 2세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합리적으로 변화할 때마다 상응하게 교환해야 한다. 당해 밀봉한 샘플은 품질분쟁이 발생할 경우 품질검사대조물로 사용할 수 있다. 밀봉한 샘플의 품질수준은 갑의 동일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증명 또는 대조 평가하는 작용을 한다.

6. A/S

갑은 을에게 필요한 A/S를 제공해야 한다. A/S 의무기간은 매번 갑이 납품을 완료한 후 1년으로 한다. 구체적인 A/S 방식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7. 불가항력 및 면책조항

- 7.1 본 계약 이행의 목적에 있어서 불가항력이란 예측 불가하고 그의 발생 및 결과를 방지 혹은 회피 할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지진, 태풍, 홍수, 화재, 및 기타 자연재해; 전쟁, 폭란 및 유사한 군사행동; 민간에서 발생하는 소동, 태업, 어느 일방의 원인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정부의 운수 금지령, 징수, 금지령 혹은 기타 제한을 말한다.
- 7.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의의 일방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 책임, 승낙 혹은 보장(모두 “의무”라 칭함)을 계약에 따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이행 불능의 일방은 불가항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에 상응한 증거나 불가항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단, 이행불능 일방은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더 이상의 큰 손실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7.3 불가항력이 발생한 후 쌍방은 불가항력이 미친 영향에 근거하여 본 계약서를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이 불능한 일방의 의무를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8. 위약 책임

- 8.1 상대방의 서면 동의로 면제를 받거나 본 계약서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라도 본 계약에서 약정한 승낙, 보장, 의무 혹은 책임(본 조에서 “의무”라 통칭한다.)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8.2 갑, 을 양 측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계약의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요구를 통지 받은 자가 제 때에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요구를 한 일방은 자체적으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지출은 위약을 한 일방이 전액을 부담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준수한 일방은 쌍방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통지절차를 취하지 않고 직접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지출은 위약을 한 일방이 전액 부담한다.

8.3 위약한 측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본 계약에서 어떠한 위약 사건이 발생하면 위약한 측은 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각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산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기타 가지급금, 추징관세와 가산세, 직접적인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 연체료 및 제3자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하며,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8.4 임의의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배상하는 외에, 위약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 금액은 미화 ()불로 한다.

8.5 상기 조항의 약정은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은 일방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쌍방이 본 계약서에 따라 확정된 주문서에서 별도로 보충한 약정 혹은 여러가지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장애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8.6 일방이 특정한 경우에 상대방의 위약행위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할 경우, 기타 상황에서도 위약자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는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계약의 사전 해지

- 9.1 본 조에서 약정한 해지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해서라도 사전에 해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 9.2 본 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갑,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해지할 수 있다.
- 9.3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의 정상 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은 합리적인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을이 규정한 기간 내에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갑이 독촉을 하였음에도 5일 내에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b) 을이 갑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한 신용장이 본 계약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갑이 독촉을 하였음에도 10일 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한 신용장이 본 계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9.4 본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일방적으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의 정상 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은 합리적인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a) 갑이 납품한 제품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대량의 컴플레인(불만)이 들어왔거나 심각한 품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신체 손해배상사고 및/혹은 재산손해사고)
 - b) 갑이 30일 이상 제품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10.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의 사후처리

- 10.1 본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 혹은 해지될 경우, 을은 제품의 판매를 정지해야 하고 갑은 최초의 가격대로 계산하여 을의 재고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만약 갑이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 종료 혹은 해지 후로부터 3개월 내에 잔고제품을 계속 판매하여 재고를 처리할 수 있다.

10.2 본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의 제4, 5, 8, 11, 13조와 제14조는 계속 유효하다.

10.3 본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갑, 을 쌍방은 10일 내에 1회에 모든 화물대금 및 기타 거래비용에 대한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11. 비밀 유지 조항

11.1 본 계약서에 있어서의 각종 상업 비밀은 기존의 권리자가 소유하며 본 계약의 체결, 교부 및 이행으로 그 소유권이 변하지 않는다. 임의의 일방이 본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혹은 취득한 상대방의 상업 비밀은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내에서 본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진행하는 목적 하, 선의로 사용할 수 있다.

11.2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기타 제 3자에게 상대방의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여 본 계약서 외의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 상기 비밀 유지 조항은 모든 당사자(을의 각 서브 판매대행 포함)의 직원에게도 동등하게 그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서 종료 혹은 해지 후 2년동안 계속 유효하다.

12. 조항의 분할 가능성

12.1 만약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한개 혹은 몇 개 조항이 그 어떤 법률 혹은 법규에 의하여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로 간주될 경우, 본 계약서의 기타 조항의 유효성, 합법성 및 집행 가능성은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쌍방은 성의있는 협상을 통하여 유효한 규정으로 위의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의 약정을 대체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체규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은 원래의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과 비슷해야 한다.

12.2 본 계약에서 사용한 조항의 표제는 열람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것이며 본 계약서 조항의 내용을 해석, 이해하는 것에 사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3. 분쟁의 해결

갑, 을 쌍방은 본 계약의 내용, 해석, 효력의 발생, 효력 및 이행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우선 우호적으로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일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30일 내에 협상으로 결과를 보지 못한 경우, 임의의 일방은 한국 서울시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당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분쟁의 각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14. 준거법

본 계약의 체결, 교부, 효력의 발생, 이행, 변경, 중지 및 해석 등은 모두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 관습을 적용한다.

15. 기타

15.1 본 계약 하의 모든 통지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서면방식으로 본 계약서 첫 페이지에 기재한 각 당사자의 팩스번호로 발송해야 하며, 팩스를 발송한 날 이후의 첫 근무일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한다. 일방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유효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팩스번호의 변경을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서 기재한 연락처의 팩스번호를 통하여 발송한 어떠한 통지도 모두 통지 효력 발생일에 통지를 받는 자에게 발송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5.2 본 계약서는 체결한 후 갑,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15.3 본 계약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한다. 한국어 계약은 1식 2부로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각 1부를 보관하고, 중국어 계약은 1식 2부로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각 언어의 계약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의미가 상충하는 경우, 한국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여백, 다음 페이지는 서명 페이지

(본 페이지는 서명 페이지이며 본문 없음)

본 계약은 갑, 을 쌍방이 ____년 ____월 ____일에 중화인민공화국 ____시에서
공동으로 서명한다.

갑:

법인대표/수권대표:

(날인)

을:

법인대표/수권대표:

(날인)

1. Purchase and Sale Contract

By and between

A:

Representative of corporation:

Address:

Phone number:

Status (Licensor, Seller) :

Fax number:

And

B:

Representative of corporation:

Address:

Phone number:

Status (Licensee, Buyer) :

Fax number:

Preface

The parties to this contract, both A and B have agreed to buy and sell 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duct') through an amicable negotiation. Both parties shall enter into and perform the contract abiding by the articles and terms of this contract.

Body

1. A's Statement and Guarantee

In the purpose of signing, issuing and enforcing this contract, A has guaranteed and stated as follows;

- 1.1 A has all the legal rights and qualifications, and is sufficiently delegated in every necessary matter that needs commission. With the right to enter into a valid contract, A shall perform the fully duties according to this agreement.
- 1.2 A shall fully perform every agreed terms and duties.
- 1.3 A is entitled to perform business activitie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under the domestic law. Signing, issuing and fulfilling this contract will not come into conflict with any of responsibilities prescribed in other present or future agreement and consultation or judicial trials and orders of courts related to A.

2. B's Statement and Guarantee

In the purpose of signing, issuing and enforcing this contract, B has guaranteed and stated as follows;

- 2.1 B has all the legal rights and qualifications, and is sufficiently delegated in every necessary matter that needs commission. With the right to enter into a valid contract, B shall perform the fully duties according to this agreement.
- 2.2 B shall fully perform every agreed terms and duties.

- 2.3 B is qualified to do business activities that are stipulated under this agreement under the domestic laws. Signing, issuing and fulfilling this contract will not come into conflict with any of responsibilities prescribed in other present or future agreement and consultation or judicial trials and orders of courts related to B.

3. Procedure of product order and delivery

- 3.1 Detailed transactions and its terms between parties will be finalized with the order sheet confirmed by the both parties, except the case where both parties have made a separate agreement. Matters that are not written or determined on the order sheet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is contract.
- 3.2 When it is necessary for B to purchase the product, B will send an order sheet in writing to A. In response, A will then reply in writ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deliver the product in no less than 10 days from the date A has received the order sheet. The order sheet that B sent to A can be withdrawn before A confirms the document in writing.
- 3.3 Where A has confirmed in writing that it is possible to deliver the product requested by B's order sheet, the order sheet is officially confirmed on the date that B has received A's letter of confirmation. B cannot withdraw the order sheet after it has been confirmed, on any account.
- 3.4 Where A needs to request any revision on the order sheet, A may require B to do so in writing. After B has received A's request for revision, B sends a new order sheet to A. The process of sending, revising, and confirming the new order sheet will be abide by Article 3.2, 3.3., and 3.4 until A confirms the final order sheet.

- 3.5 The order sheet shall describe type, specification, price (including total price, unit cost, discount price, etc.), quantity, date of delivery, demand for insurance and packaging, destination of delivery, and special means of transportation.
- 3.6 Delivery of the product shall be generally made in no less than 35 days after B has established the L/C of the product, except for cases where there are separate explanation or agreement in the order. The product shall be shipped to FOB(Incheon Harbor of South Korea), unless there are separate explanation or agreement in the order sheet. General means of packaging which B requests will be used. The insurance policy of B will cover the product.
- 3.7 A goes through all the necessary procedure regarding the product export from Korea at A's own expense. Based on valid documentary evidence provided by A, B goes through all the necessary process regarding importing to China at B's own expense.
- 3.8 To verify the quality of cargo, B shall conduct quality inspec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cargo has arrived at the destination written on the order sheet of B. B shall assume expenses for quality inspection, and the detailed methods of quality inspection is as follows; _____
- 3.9 Where B discovers the quality of product fails to meet quality standard written on the order sheet, B shall immediately raise objections to A. This objection shall be made within 20 days after the cargo has arrived at the confirmed destination written on the order sheet of B. If B exceeds this time limit, B cannot further make objections about the quality of the cargo.

4. Price and settlement of payment

- 4.1 For the convenience of payment settlement, B shall deposit 50% of agreed payment of cargo to the account that A designated in no less than 7 days after the confirmation of the order sheet. Moreover, B shall establish an L/C for the remaining 50% of the payment in 15 days after the prepayment. Where B withdraws or violates the order sheet for many reasons, the prepayment will be diverted to cancellation charge. If B cannot fully cover the cancellation charge or reimburse damage with prepayment, B shall continue to reimburse until damages are fully paid.
- 4.2 Prices (including total price and unit cost) on the order sheet that was delivered and confirmed according to the contract will all be FOB price, unless there is separate agreement or explanation on the order sheet.
- 4.3 A shall guarantee that prices of the product provided to B is not higher than the price suggested to the third party under the same condition.
- 4.4 On the account of price change, B shall give a written notice at least 15 days in advance of the date on which B hopes to apply the changed price.
- 4.5 Prepayment for cargo will be made by T/T, while the other payments will be by L/C. L/C shall be irrevocable and clear documentary credit.
- 4.6 Every price unit and currency for payment will be in US dollar, unless there are separat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B shall be responsible for foreign currency exchange and remittance in the process of payment.

- 4.7 In executing the terms of the order sheet of this contract, B will be responsible for all tax expenses in the process of importing the product from China.
- 4.8 B shall observe the time limit for the payment. B cannot unduly delay the payment.

5. Quality assurance and product defect

- 5.1 Quality Standards for the product that A sells to B is as follows:
- 5.2 Products are deemed to be disqualified in the following cases:
- a) Shortage of quantity and excess of margin of error
 - b) Where the quality of the product fails to the quality standards
 - c) Where there is the Chinese or Korean government authorized report of significant defects in the product and the technology.
- 5.3 A shall guarantee the consistency of the product quality, and that the quality meets the quality, safety, and other standards which are requir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ese law as mandatory.
- 5.4 To realize the aim of this contract, A shall provide two sets of samples which are sealed after the contract takes into effect. Whenever the technology applied to product changes for reason, the sample change occurs correspondingly. The sealed sample can be used as a reference on account of quality dispute. The quality of sealed sample shall be compared and verified against A's identical product.

6. After-sales Service

A shall provide B after-sales service when needed. Warranty period for after-sales service will be one year from the date A completes his/her delivery. Detailed methods of after-sales service are as follows:

7. Force Majeure and Immunity Clause

- 7.1 Force Majeure in this contract refers to incidents that are unable to predict or impossible to prevent or avoid. For example, it includes earthquakes, typhoon, flood, fire, and other natural disasters; war, military up rise; civil demonstration, walkout, government transportation ban because of other than one reason, and other prohibitions and limitations.
- 7.2 Where it become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duties, liabilities, guarantees and permission (all referred to as “duty”) according to the contract, the party who cannot fulfill the duty shall inform the counter party of this situation in 15 days after the uncontrollable incidents takes place, by providing evidence or documents of evidence certifying it was irresistible. However, the party who cannot fulfill the duty shall actively seek for reasonable remedies in order to prevent any further loss or damage.
- 7.3 Where uncontrollable incidents take place, both parties of the contract shall decide whether they will revise the agreement considering the effects of uncontrollable incidents, and whether they will exempt partly or wholly the duties of the party impossible of carrying out his/her duties.

8.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Breach of Contract

- 8.1 Unless it was exempt with the counter party's written consent or separate agreement in the contract, the party violating agreed permission, guarantee, duties(referred to as "duty"), and responsibilities agreed in the contract shall bear the corresponding legal responsibility.
- 8.2 Where one of both parties breaches the duty agreed in the contract, the counter party may request commitment of duty or suitable remedy within reasonable period in writing. Where the requested party fails to take relief action at the right moment, the requesting party may autonomously take relief measures, and the expenses and expenditures derived from execution of these relief measures are whol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who broke the contract. In emergency, the party who observed the contract may directly take reasonable remedy without notification procedure for mutual interest, and the defaulter pays the full expenses and expenditures derived from execution of these relief measures.
- 8.3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ty who breached the contract has the liability, the party should compensate any losses occurred to the counter party due to the breach of contract, including compensation for property or physical damages, provisional payment, penalty tax and additional tax, lawyers fee and court expenses, arrears, and compensation for the third party. However, i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what was mentioned above.
- 8.4 Where one party breaches the contract, cancellation charge should be paid in addition to loss compensation. The cancellation charge shall be paid in US dollars.

8.5 The agreement stipulated in provisions mentioned above shall not be taken as limita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who suffers he damage due to breach of contract or barrier to obtain various rights and interests supplemented by separate agreement in the order sheet confirmed by both parties.

8.6 Where one party waives his/her right on account of breach of contract in certain cases, it should not be deemed to relinquish the right in other breach of contract cases.

9. Termination of Contract

9.1 Except for the cases where the stipulated Termination conditions are met, this contract shall not be cancelled unilaterally prior to its expiration.

9.2 In spite of the agreed conditions, this contract may be cancelled by both parties consent in prior to its expiration.

9.3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contract, A may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the due expiration date with a unilateral written notification 15 days in advance. However, A shall provide reasonable evidences.

- a) Where B failed to pay prepayment within prescribed term, and where B did not pay prepayment within five days even after A's demand for payment
- b) Where B did not establish L/C to A, or the established L/C does not meet requirements of this contract, and where L/C was not established within 10 days even after A's demand for establishment or the established L/C does not meet requirements of this contract

9.4 On account of the following cas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contract, B may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the due expiration date with a unilateral written notification 15 days in advance. However, B shall provide reasonable evidences.

- a) Where the product that A delivered has serious quality defect, causing a number of customer complaints or grave accidents (EX. Accidents that can claim compensation for physical/property damage)
- b) Where A delays product delivery for more than 30 days

10.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Contract and Post Management

10.1 Where this contract expires or terminates for some reasons, B shall discontinue sales of the product and B shall recover the inventories based on the initial price. If A does not agree on product recovery, B may dispose inventories by selling the product within three month from the contract expiration or termination.

10.2 Where this contract expires or terminates for some reasons, article 4,5,8,11,13, and 14 of this contract are still valid.

10.3 Where this contract expires or terminates for some reasons, both A and B shall complete payment for freight and other expenses in lump sum within 10 days.

11. Confidentiality Clause

11.1 All the commercial confidentiality in this contract belongs to the original right holder, and the signing, issuing, and enforcing this contract does not affect the ownership. Any of counter party's commercial confidentiality that one party gets to know or obtain

in implementing this contract may be used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of this contract in good faith within expiration date.

11.2 The commercial confidentiality of the counter party shall not be revealed or be allowed the use before the expiration date without the written consent. It should not be allowed to gain profit taking advantage of the commercial confidentiality other than the use for this contract.

11.3 The confidentiality clause has equal effect on the employees of every parties (including B's sales representatives), and is valid for two years sinc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contract.

12. Possibility of clause separation

12.1 If one or several clause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are deemed to be null, illegal, and non-enforceable by some laws or regulations, the effectiveness, legitimacy, and enforceability of the other clauses shall not be affected. Both parties shall replace the clauses deemed null, illegal, and non-enforceable with valid ones through considerate negotiation, and economic benefit caused by the replaced clause shall be similar to that caused by the original agreement.

12.2 Titles of this contract were voluntarily set for convenience, which shall not affect interpretation and comprehension of this contract and in any other ways.

13. Settlement of Dispute

On the account of dispute over content, interpretation, effectuation, validity, and implementation of this contract, both A and B shall pursue settlement through amicable negotiation. Where one party does not want to negotiate or dispute was not settled within 30 days through negotiation, one party file for arbitration to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located in Seoul, Korea and undertakes arbitration under the rule of arbitration authority. Arbitration award is final and legally binding to parties of the dispute.

14. Governing Law

Signing, issuing, effectuation, implementation, modification, validity, cess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applied where there is no governing regulation in the Korean Law.

15. Miscellaneous

15.1 All the notification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written form and be sent to the parties via fax to the number written on the first page of this contract except the cases where there is a separate code. The notification takes effect on the first working day from the date when fax was sent. Except for cases where one party informs the other party any changes with the fax number by valid mean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any notification sent at

the fax number listed on this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sent to recipient on the date when the notification becomes effective.

15.2 After signing, this contract may be modified or supplemented in writing with both A and B's consent.

15.3 This contract will be written in Korean and Chinese. The two copies of same formatted contract in Korean will be made so that A and B both have each copy. The two copies of same formatted contract in Chinese will be made so that A and B both have each copy. The contracts in both languages have equal legal effect. Where the meaning of contract conflicts with the other in the other language, Korean shall be the standard.

Blank Below. Next page is for signature

(This page do not contain body but signature.)

Both A and B cosign this contract on Month, Date, Year in Ci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Corporation Representative/Authorized Representative:
Signature)

B:

Corporation Representative/Authorized Representative:
Signature)

1. 销售合同

甲方：(卖方)
法定代表人：职务：
法定住址：
电话号码：传真号码：

乙方：(买方)
法定代表人：职务：
法定住址：
电话号码：传真号码：

甲方与乙方经过友好协商，现就乙方购买甲方_____产品(以下‘货物’)的事宜达成如下安排，双方以本合同的所有各项条款和条件签署合同，供双方遵照执行。

正文

一、甲方陈述与保证

甲方为本合同的签署、交付和履行，陈述和保证如下：

- 1.1 其具备所有的法律权力、资格，在需要授权的情况下，业已取得所有充分和必要的授权，可有效签订本合同，并受本合同的完全和完整的法律约束；

- 1.2 其在本合同下的所有承诺、义务均会得到其完整有效地履行；
- 1.3 甲方具有在本国法律下具有从事本合同下经营活动的能力，而且本合同的签订、交付和履行均不会对甲方目前和今后进入的其他合同、协议和契约中约定的其义务构成冲突，也不会与任何可能与甲方有关的司法裁决、法庭命令等冲突。

二、乙方陈述与保证

乙方为本合同的签署、交付和履行目的，陈述和保证如下：

- 2.1 其具备所有的法律权力、资格，在需要授权的情况下，业已取得所有充分和必要的授权，可有效签订本合同，并受本合同的完全和完整的法律约束；
- 2.2 其在本下合同的所有承诺、义务均会得到其完整有效地履行；
- 2.3 乙方具有在本国法律下具有从事本合同下经营活动的能力，而且本合同的签订、交付和履行均不会对乙方目前和今后进入的其他合同、协议和契约中约定的其义务构成冲突，也不会与任何可能与乙方有关的司法裁决、法庭命令等冲突。

三、定货计划和订、交货程序

- 3.1 除双方在本合同中另有约定，或者在订单上另有说明或约定，双方的具体供货交易以及交易条件由双方确认的订单为准，订单上缺失或者不确定的部分按照本合同的约定执行。
- 3.2 乙方需要购买货物时，应当向甲方发出书面订单，甲方收到订单后应当在10天之内已书面方式回复是否可以按照订单的内容发货。乙方向甲方发出的订单可以在收到甲方书面确认之前予以撤销。
- 3.3 甲方如果书面确认可以按照乙方订单的内容发货，则在乙方收到甲方

的书面确认之日为订单正式确定之日。订单确定后,乙方不得以任何理由撤销订单。

- 3.4 如果甲方对订单有修改要求,可以书面向乙方提出修改要求。乙方收到甲方书面修改要求后,向甲方重新发出订单。乙方发出订单以及甲方修改或确认订单的程序按照3.2至3.4的约定处理,直至甲方最终确认订单。
- 3.5 订单应记载或者确认适用的品种与规格、价格(包括总价和单价,包括适用的抵扣额)、订货需求量、品质要求、交货期限要求、保险要求、包装要求、交货目的地以及特殊的运输方式要求等。
- 3.6 除订单另有说明或者约定外,交货期限应不晚乙方支付预付款之日起的45天;除订单另有说明或者约定外,交货方式为F○B(韩国INCHON港),运输方式为海运;包装按照乙方在定单上的要求处理;保险由乙方自理。
- 3.7 甲方应当自行承担费用并自行解决产品从韩国出口所需要办理的所有手续。乙方应当自行承担费用并在甲方提供的有效单据的基础上,自行负责完成货物进口中国环节所需的全部手续。
- 3.5 为检查货物的质量,乙方应在货物到达乙方在订单中确定的目的地后的10天内完成质量检验,商品检验的费用由乙方自行承担。质量检验的具体方式如下:_____。
- 3.6 乙方如果在质量检验中发现货物质量不符合订单要求的,应当立即向甲方提出异议。乙方提出异议的时间不得迟于货物到达乙方在订单中确定的目的地后的20天。超过该期限后,乙方不得对质量问题提出异议。

四、价格和货款结算

- 4.1 为方便结算,确定订单后7天内,乙方应当向甲方指定的帐户支付订单中约定货款的50%,作为预付款,并应当在支付预付款后的15天

内就剩余50%的货款向甲方开具信用证。乙方因各种原因取消订单货做出起其它违约行为,该预付款将作为违约金处理。该预付款不足以支付违约金或不足以赔偿甲方损失的,乙方应当继续向甲方赔偿,直至足额清偿完毕。

- 4.2 本合同下发出和确认的订单价格(包括单价和总价),除非该确认订单另有约定或者说明外,应为FOB(韩国INCHON港)价格。
- 4.3 甲方应保证其向乙方提供的供货价格,在同等条件下不高于其给予任何第三方的供货价格。
- 4.4 甲方对货物的价格发生变动,如果希望适用于乙方,应至少提前15天书面通知乙方。
- 4.5 货物款项,除预付款使用T/T方式支付外,其他均使用L/C形式结算。该L/C应为不可撤消的、清洁的、即期跟单信用证。
- 4.6 除非双方另有约定,所有订单下的计价和支付货币为美元。乙方应当自行解决在支付各类款项时的外汇兑换和/或汇出的问题。
- 4.7 因履行本合同下供货订单而由乙方进口中国场所发生的所有进口环节费用和税款由乙方自行承担。
- 4.8 乙方应当严格遵守付款期限,不得无故拖延支付任何款项。

五、质量保证和产品瑕疵

- 5.1 甲方出售给乙方的货物质量标准如下：
- 5.2 当发生下述任一情况的,属于交货质量不合格：
 - a) 数量短缺超过允许误差范围的；
 - b) 货物质量不符合质量标准的；
 - c) 在韩国政府下属的质量检验机构或中国政府下属的质量检验机构有经过证实的、针对货物或者其采用技术的重大瑕疵报告的。

- 5.3 甲方应保证其供货产品品质的一致性,以及必须符合中国法律和中国政府对同类产品实施的各类强制和法定质量标准、安全标准和其他适用标准。
- 5.4 为本合同目的,甲方应在合同生效后向乙方提供封样的货物每种规格二套,并在货物技术指标合理变化时进行相应替换,该封样货物可在发生任何货物质量争议时作为检验对照物使用,封样货物的品质水平具有对甲方相同货物的品质要求具有终局性的证明或者对比评判的作用。

六、售后服务

甲方有义务向乙方提供必备的售后服务。售后服务义务期间为每一次甲方交货后的一年。具体的售后服务方式约定如下：

七、不可抗力和免责条款

- 7.1 不可抗力是指无法预见并且对其发生和后果无法防止或避免的事件,例如地震、台风、水灾、火灾和其他自然灾害,战争、暴动和类似的军事行动,民间骚动以及罢工、怠工,非因任何一方的原因而产生的政府的禁运令、征用、禁止令或其他限制和行动(以上统称为不可抗力事件)。
- 7.2 因不可抗力事件而使任何一方在本合同下的义务、责任、承诺或者保证(统称为义务)无法按照约定履行的,该受阻方应当在不可抗力发生之日起的15天内书面通知对方,并向对方提供相应的证据或能够证明不可抗力的公证文件。但是受阻方仍应当积极采取合理的补救以避免更大的损失。
- 7.3 不可抗力事件发生后,双方应根据不可抗力事件对本合同的影响,决

定是否修改本合同, 以及是否部分或者全部地免除受阻方在本合同中的义务。

八、违约责任

- 8.1 除非经另一方书面同意豁免或免除或者本合同另有约定, 任何一方违反其在本合同下的任何承诺、保证、义务或责任的(在本条中统称为义务), 均应继续履行其在本合同下的各项义务, 并承担其他相应的法律责任。
- 8.2 甲、乙双方违反其在本合同下任一义务的, 对方有权书面通知其继续履行其在本合同下的义务或书面通知其在通知方给定的合理期限内采取合理的补救措施。如违约方未及时采取补救措施, 通知方可以采取自救措施而且因采取自救措施而遭受的费用或者花销应由违约方全额承担。在紧急情况下, 遵守合同的一方为双方的共同利益, 不经通知程序而直接采取合理的自救措施, 因此而遭受的费用或者花销应由违约方全额承担。
- 8.3 不论违约方是否具有过错, 在本合同下任一违约事件发生时, 违约方均应当赔偿对方因该违约事件而遭受的各类损失, 包括但不限于财产或人身损害赔偿或者其垫付款、惩罚性关税、律师和法庭费用、滞纳金和对第三方的赔款。
- 8.4 任何一方违反本合同, 除了给对方赔偿损失外, 还应当支付违约金。违约金的数额为: 美金_____元。
- 8.5 本条前述约定在任何时候不应被理解为对被违约方在适用法律下的各项权利和利益的限制, 也不应视为对双方在依照本合同所确定的任何订单上所另行或者补充约定或者取得的各项权利和利益的限制。
- 8.6 一方在某一特殊情况下, 对另一方的违约行为放弃其权利, 不应视为在其他情况下, 对违约方的类似违约行为放弃其权利。

九、合同的提前解除

9.1 非因本条下约定的解除条件的满足, 本合同不应被任何一方提前解除。

9.2 尽管本合同下的其他规定, 本合同可因甲乙双方的协商一致而提前解除。

9.3 本合同履行过程中发生如下任一情况的, 甲方可以以单方书面提前15天通知的方式在本合同正常到期日前解除本合同, 但甲方必须随附提供相应的和合理的证明材料:

- a) 乙方没有在规定期限内支付预付款, 并经过甲方催促后5天内能不支付预付款的。
- b) 乙方没有向甲方开具信用证、或者乙方开具的信用证不符合本和同要求, 经甲方催促后10天内仍不开具信用证或开具的信用证仍不符合本和同规定的。

9.4 本合同履行过程中发生如下任一情况的, 乙方可以以单方书面提前15天通知的方式在本合同正常到期日前解除本合同, 但乙方必须随附提供相应的和合理的证明材料:

- a) 甲方供货产品发生严重质量问题, 或者遭到最终消费者的大量投诉, 或者发生较为严重的质量事故(包括人身损害事故和/或财产损害事故);
- b) 甲方迟延交货30天以上的。

十、合同终止或者解除后的相关安排

10.1 无论本合同如何终止或者解除, 本合同第四、五、八、十一、十三、十四条仍继续有效。

10.2 无论本合同如何终止或者解除, 甲乙双方应当在十日内一次性结清所有货款和其他往来费用。

十一、保密条款

- 11.1 本合同下的各项商业秘密应归原权利所有人所有,并不因本合同的签署、交付和履行而改变权属性质。任何一方对在本合同履行过程中知晓或者取得的商业秘密,只有在本合同有效期内为经营本合同下业务而可善意使用。
- 11.2 在本合同有效期内,一方未经对方书面同意,不得向任何第三方披露或者允许第三方使用对方的商业秘密,或者为自己谋取本合同之外的利益。
- 11.3 前述保密义务,对于任何受一方的雇员同样有效,并在本合同终止或者解除后2年内一直有效。

十二、条款的可分割性

- 12.1 若本合同中规定的一项或多项条款,根据任何法律或法规在任何一方面被视为无效、不合法或不可执行,本合同中其余各项约定的有效性、合法性和可执行性并不因此在任何方面受到影响或者损害。双方应通过诚意磋商,努力以有效的规定取代那些无效、不合法或不可执行的约定,而该等有效的规定所产生的经济效果应尽可能与那些无效、不合法或不可执行的约定所产生的经济效果相似。
- 12.2 本合同所用标题仅为方便查阅而设,不应被用于解释、理解或以其他方式影响本合同条款的含义。

十三、纠纷的解决

甲乙双方就本合同的内容、解释、生效、效力和履行而发生争议,应先友好协商解决,任何一方不愿协商或者在30天内协商未果的,任何一方均可向位于韩国首尔市大韩商事仲裁院申请仲裁解决,按照该仲裁机构当时有

效的仲裁规则进行仲裁。仲裁裁决是终局性的，对争议各方具有最终的法律约束力。

十四、适用法律

本合同的签署、交付、生效、履行、变更、效力、终止和解释等，均适用大韩民国的法律，大韩民国法律没有规定的，适用国际惯例。

十五、其他

15.1 本合同下的任何通知，除另有约定外，均应采取书面形式以传真发出至本合同首页上记载的各方的传真号码，并在传真通知发出之日后的第一工作日为生效日。除非任何一方以本合同下约定的有效方式另行通知对方其更改了传真号码，否则按照本合同下登记的被通知方的传真号码发出的任何通知，均应被视为在通知生效日已由被通知方收到并生效。

15.2 本合同在签署之后可根据甲乙双方的共同协商一致，以书面方式进行修改、修正或补充。

15.3 本合同自双方签字之日起生效，合同有效期限为1年。

15.3 本合同以中文和韩文书就。中文文本的合同一式二份，甲乙双方各执一份，韩文文本的合同一式二份，甲乙双方各执一份。各份文本具有同等法律效力。当两种文字版本的合同发生语意冲突的，以韩文文本为准。

以下无正文，下接签字页

(本页为签字页，上接主文页)

本合同由甲乙双方于____年____月____日在中华人民共和国____市共同签署。

甲方：

法定代表人/授权代表人：

(签章)

乙方：

法定代表人/授权代表人

(签章)

2. 독점판매계약서

갑: (라이센서, 매도인)

법인대표: 직 위:

법정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을: (라이센시, 매수인)

법인대표: 직 위:

법정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언

을은 중국시장에서 갑의 _____제품(이하 ‘제품’) 판매에 대한 수요에 응하여, 갑, 을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독점판매관계에 관하여 본 계약 체결하며, 쌍방이 이를 준수하여 집행할 것이다.

본문

1. 갑의 진술과 보증

갑은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보증을 하는 바이다.

1.1 갑은 모든 법적권리, 자격을 갖고 있고 위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모든 충분하고 필요한 위임을 받은 상태이며,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고 본 계약에 따라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 1.2 본 계약에서의 갑이 승낙한 모든 사항과 의무는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 1.3 갑은 제품의 생산자이며 제품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그 어떤 제3자의 제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 1.4 갑은 제품에 대한 완전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으며,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그 어떤 제3자의 지적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 1.5 갑은 본국의 법률 하에서 본 계약에서 규정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이 갑이 현재 또는 향후에 기타 계약, 협의에서 약정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갑과 관련된 사법재판, 법원의 명령 등과도 충돌이 없을 것이다.

2. 을의 진술과 보증

을은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보증을 하는 바이다.

- 2.1 을은 모든 법적권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위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모든 충분하고 필요한 위임을 받은 상태이며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본 계약에 따라 완전하게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 2.2 본 계약에서의 을이 승낙한 모든 사항과 의무는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 2.3 을은 본국의 법률하에서 본 계약에 규정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이 을이 현재 또는 금후에 기타 계약, 협의에서 약정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을과 관련된 사법재판, 법원의 명령 등과도 충돌이 없을 것이다.

3. 제품의 공급과 독점판매 라이선스

- 3.1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을 제외) 전역으로 한다.
- 3.2 본 계약에서의 독점적 판매라 함은 을이 본 계약의 제품에 대하여 중국 국내에서 유일한 판매 총 대행이 되는 것이며 을의 판매 취급 방식은 소매, 도매, 서브 판매대행 지정 등의 수단을 포함하며 반드시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갑은 계약기간내에 기타 제3자에게 이 지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는 안되며 자신의 명의로 혹은 그의 공급자, 생산자 혹은 계열사를 통하여 동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
- 3.3 상기 조항에서의 독점적 판매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직접 판매가 가능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 3.4 을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갑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갑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독점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 3.5 갑과 을은 서로 독립적인 기업법인으로, 쌍방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함으로 인하여 합작, 합자 혹은 연합경영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상대방의 경영행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어느 일방이든 그 경영 활동중에서 제3자에게 이러한 사실과 상반되는 증명, 의사표시, 해석 혹은 표현을 하여서는 안된다.

4. 계약의 유효기간

- 4.1 갑을 쌍방의 협상에 의하여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____년 ____월 ____일 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본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2 임의의 일방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경우, 계약 만료 30일 전에

서면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쌍방의 협상에 따라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본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 4.3 을이 본 계약 기간 내에 제품을 판매한 실적이 좋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 을은 우선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진다.

5. 제품의 주문과 납품 절차

- 5.1 갑, 을 쌍방은 합작 과정에서 매 6개월에 한번씩 공동으로 다음 6개월의 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을 약정한다.
- 5.2 쌍방이 본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의 구체적인 거래 및 거래의 조건은 쌍방 간에 확인한 주문서에 의하여 확정된다. 주문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확정하지 않은 부분은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 5.3 을이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주문서를 발송하며, 갑은 주문서를 받은 후 10일 내에 서면 방식으로 주문서의 내용에 따라 제품 발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한다. 을이 갑에게 발송한 주문서는 갑의 서면 확인을 받기 전에는 철회 가능하다.
- 5.4 갑이 을의 주문서에 따라 제품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을이 갑의 서면확인을 받은 날에 주문서가 정식 확정된 것으로 한다. 주문서가 확정된 후 을은 그 어떤 이유로든 주문서를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 5.5 갑이 주문서에 대하여 수정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을에게 수정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서면 수정요구를 받은 후 갑에게 새로운 주문서를 발송한다. 을이 주문서를 발송하고 갑이 주문서를 수정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갑이 최종 주문서를 확인할 때까지 5.3부터 5.5조의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 5.6 주문서에는 제품의 종류와 규격, 가격(총 가격과 단가, 할인금액 등을 포함), 수량, 납품기간, 보험에 대한 요구, 포장에 대한 요구, 납품의 목적지 및 특수한 운송방식 등의 요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오더에 별도의 설명 혹

은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납품시간은 일반적으로 을이 당해 제품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35일 내로 한다. 주문서에 별도의 설명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납품 방식은 FOB(한국 인천항)이고 운송방식은 해상운송으로 한다. 포장은 을이 요구하는 일반 포장방식으로 하며 보험은 을이 책임진다.

5.7 갑은 자체의 비용으로 제품을 한국에서 수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속을 한다. 을은 자체의 비용으로 갑이 제공하는 유효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중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속을 한다.

5.8 을은 품질검사에서 화물의 품질이 주문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은 화물이 을의 주문서에 확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후 20일 내로 한다. 당해 기한을 초과한 경우 을은 품질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가격과 대금결산

6.1 결산의 편리를 위하여 주문서를 확정한 후 7일 내에 을은 갑이 지정한 계좌에 주문서에서 약정한 화물대금의 50%를 선불금으로 입금한다. 또한 선불금을 지급한 후 15일 내에 나머지 50% 대금에 관하여 갑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을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주문서를 철회하거나 기타 위약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해 선불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한다. 선불금으로 전부 위약금을 지불할 수 없거나 갑의 손실을 전액 배상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전액을 배상할 때까지 갑에게 계속 배상해야 한다.

6.2 본 계약에 따라 발송하고 확인한 주문서의 가격(단가와 총가격을 포함)은 당해 주문서에 별도의 약정 혹은 설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FOB(한국 인천항)가격이다.

6.3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제품 가격이 동등한 조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가격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보증한다.

- 6.4 갑은 제품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을이 당해 변동가격 적용을 희망할 시 15 일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5 화물대금의 지불은 선불금을 T/T방식으로 지불하는 외에 기타 금액은 L/C로 지불한다. 당해 L/C는 취소불능의, 명백한 회환신용장이어야 한다.
- 6.6 쌍방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모든 주문서에 대한 가격단위와 지불화폐는 모두 미화로 한다. 을은 화물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의 외환 환전과 외 환 송금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 6.7 본 계약에 따른 주문서를 이행함으로써 인하여 을이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을이 전부 부담한다.
- 6.8 을은 대금지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품질보증과 제품의 하자

- 7.1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품질기준 기재)

- 7.2 다음의 경우, 당해 제품은 납품 품질 불합격으로 본다.
- a) 수량 부족하며, 규정된 오차범위를 초과할 경우
 - b) 화물의 품질이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c) 한국정부 소속의 품질검증기구 또는 중국정부 소속의 품질검증기구에서 증명한, 화물이나 그 기술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경우
- 7.3 갑은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이 중국 법률과 중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강제적인 품질기준, 안전기준과 기타 기준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7.4 본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은 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을에게 밀봉한 샘플 2세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합리적으

로 변화할 때마다 이에 상응하게 교환해야 한다. 당해 밀봉한 샘플은 품질 분쟁이 발생할 경우 품질검사대조물로 사용할 수 있다. 밀봉한 샘플의 품질수준은 갑의 동일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증명 또는 대조평가하는 작용을 한다.

8. A/S

갑은 을에게 필요한 A/S를 제공해야 한다. A/S의무기간은 매번 갑이 납품을 완료한 후 1년으로 한다. 구체적인 A/S방식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9. 경영 자주권의 보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이 있는 외에 을은 그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경영 리스크를 자체로 부담하고, 모든 경영 성과를 가질 수 있다. 본 계약에서의 어떠한 약정이라도 갑이 을에게 그 어떤 경영수익을 승낙하거나 손실을 부담한다는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10. 불가항력 및 면책조항

10.1 본 계약 이행의 목적에 있어서 불가항력은 예측 불가하고 그의 발생 및 결과를 방지 혹은 회피 할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지진, 태풍, 홍수, 화재, 및 기타 자연재해; 전쟁, 폭란 및 유사한 군사행동; 민간에서 발생하는 소동, 태업, 어느 일방의 원인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정부의 운수 금지령, 징수, 금지령 혹은 기타 제한을 말한다.

10.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의의 일방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 책임, 승낙 혹은 보증(모두 “의무”라 칭함)을 계약에 따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이행불능의 일방은 불가항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불가항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단, 이

행불능 일방은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더 큰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한다.

- 10.3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쌍방은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에 근거하여 본 계약서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불능 일방의 의무를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11. 위약 책임

- 11.1 상대방의 서면 동의로 면제를 받거나 본 계약서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라도 본 계약에서 약정한 승낙, 보증, 의무 혹은 책임(본 조에서 “의무”라 통칭한다.)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11.2 갑, 을 각측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계약의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통지 받은 자가 제때에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통지를 한 일방은 자체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지출은 위약을 한 일방이 전액 부담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준수한 일방은 쌍방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통지절차를 취하지 않고 직접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지출은 위약을 한 일방이 전액 부담한다.
- 11.3 위약측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본 계약에서 어떠한 위약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위약측은 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각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산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기타 가지급금, 추징관세와 가산세, 직접적인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 연체료 및 제3자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1.4 임의의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배상하는

외에, 위약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 금액은 미화 ____불로 한다.

11.5 상기 조항의 약정은 계약 위반 피해를 당한 일방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쌍방이 본 계약서에 따라 확정된 주문서에서 별도로 보충한 약정 혹은 여러가지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장애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11.6 일방이 특정한 경우 상대방의 위약행위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할 경우, 기타 상황에서도 위약자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는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계약의 사전 해지

12.1 본 조에서 약정한 해지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해서라도 사전에 해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12.2 본 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갑,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해지할 수 있다.

12.3 본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의 정상 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은 상응한, 합리적인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을이 규정한 기간 내에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갑이 독촉을 하였음에도 5일 내에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b) 을이 갑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한 신용장이 본 계약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갑이 독촉을 하였음에도 10일 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한 신용장이 본 계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12.4 본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일방적으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의 정상 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은 상응한, 합리적인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갑이 납품한 제품이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량

컴플레인이 들어왔거나 심각한 품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신체 손해배상사고 및/혹은 재산손해사고)

b) 갇이 30일 이상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13.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의 사후처리

- 13.1 본 계약서가 어떤 이유로 종료 혹은 해지될 경우, 을은 제품의 판매를 정지해야 하고 갇은 최초의 가격대로 계산하여 을의 재고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만약 갇이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 종료 혹은 해지 후의 3개월 내에 잔고제품을 계속 판매하여 재고를 처리할 수 있다.
- 13.2 본 계약서가 어떤 이유로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의 제 6,7,11,14,16과 17조는 계속 유효하다.
- 13.3 본 계약서가 어떤 이유로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갇, 을 쌍방은 10일 내에 1회에 모든 화물대금 및 기타 거래비용을 정산 완료해야 한다.

14. 비밀 유지 조항

- 14.1 본 계약서에 있어서의 각종 상업 비밀은 기존의 권리자에 의해 소유되며 본 계약의 체결, 교부 및 이행으로 그 소유권이 변하지 않는다. 임의의 일방은 본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 알게 되거나 혹은 취득한 상대방의 상업 비밀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내에 본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영위하는 목적으로 선의로 사용할 수 있다.
- 14.2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기타 제 3자에게 상대방의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여 본 계약서 외의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3 상기 비밀 유지 조항은 모든 당사자(을의 각 서브 판매대행 포함)의 직원에게도 동등하게 그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서 종료 혹은 해지 후 2년내에 계속 유효하다.

15. 조항의 분할 가능성

- 15.1 만약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한개 혹은 몇 개 조항이 그 어떤 법률 혹은 법규에 의하여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로 간주될 경우, 본 계약서의 기타 조항의 유효성, 합법성 및 집행 가능성은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쌍방은 성의있는 협상을 통하여 유효한 규정으로 위의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의 약정을 대체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체규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은 원래의 약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과 비슷해야 한다.
- 15.2 본 계약에서 사용한 조항의 표제는 열람의 편리를 위해 설정한 것이며 본 계약서 조항의 내용을 해석, 이해하는 것에 사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6. 분쟁의 해결

갑, 을 쌍방은 본 계약의 내용, 해석, 효력의 발생, 효력 및 이행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우선 우호적으로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일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30일 내에 협상으로 결과를 보지 못한 경우, 임의의 일방은 한국 서울시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당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분쟁의 각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17. 준거법

본 계약의 체결, 교부, 효력의 발생, 이행, 변경, 효력, 중지 및 해석 등은 모두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 관습법을 적용한다.

18. 기타

- 18.1 본 계약 하의 모든 통지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서면방식으로 본 계약서 첫 페이지에 기재한 각 당사자의 팩스번호로 발송해야 하며, 팩스를 발송한 날 이후의 첫 근무일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한다. 일방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유효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팩스번호의 변경을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서 기재한 연락처의 팩스번호에 발송한 어떠한 통지도 모두 통지 효력 발생일에 통지를 받는 자에게 발송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18.2 본 계약서는 체결한 후 갑,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 18.3 본 계약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한다. 한국어 계약은 1식 2부로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각 1부를 보관하고, 중국어 계약은 1식 2부로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각 언어의 계약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가지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의미가 상충하는 경우, 한국어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여백, 다음 페이지는 서명 페이지

(본 페이지는 서명 페이지이며 본문 없음)

본 계약은 갑, 을 쌍방이 ____년 ____월 ____일에 중화인민공화국 ____시에서
공동으로 서명한다.

갑:

법인대표/수권대표:

(날인)

을:

법인대표/수권대표:

(날인)

2. Exclusive Sales Contract

By and between

A:

Representative of corporation:

Address:

Phone number:

Status (Licensor, Seller) :

Fax number:

And

B:

Representative of corporation:

Address:

Phone number:

Status (Licensee, Buyer) :

Fax number:

Preface

The parties to this contract, both A and B have agreed to sign this exclusive sales contract through an amicable negotiation in response to B's demand to sell A's produ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duct') in the Chinese market. Both parties shall enter into and perform the contract abiding by the articles and terms of this contract.

Body

1. A's Statement and Guarantee

In the purpose of signing, issuing and enforcing this contract, A has guaranteed and stated as follows;

- 1.1 A has all the legal rights and qualifications, and is sufficiently delegated in every necessary matter that needs commission. With the right to enter into a valid contract, A shall perform the fully duties according to this agreement.
- 1.2 A shall fully perform every agreed terms and duties.
- 1.3 A is the manufacturer of the product with the full right. Signing and implementation of this contract shall not infringe any of the rights of the third party.
- 1.4 A has fu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ver the product. Signing and implementation of this contract shall not infringe any of the rights of the third party.
- 1.5 A is entitled to perform business activitie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under the domestic law. Signing, issuing and implementation of this contract will not come into conflict with any of responsibilities prescribed in other present or future agreement and consultation or judicial trials and orders of courts related to A.

2. B's Statement and Guarantee

In the purpose of signing, issuing and enforcing this contract, B has guaranteed and stated as follows;

- 2.1 B has all the legal rights and qualifications, and is sufficiently delegated in every necessary matter that needs commission. With the right to enter into a valid contract, B shall perform the fully duties according to this agreement.
- 2.2 B shall fully perform every agreed terms and duties.
- 2.3 B is qualified to do business activities that are stipulated under this agreement under the domestic laws. Signing, issuing and fulfilling this contract will not come into conflict with any of responsibilities prescribed in other present or future agreement and consultation or judicial trials and orders of courts related to B.

3. Product Supply and Exclusive License

- 3.1 Based on both parties' agreement, B can exercise exclusive sales right in the whole reg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under this contract(hereinafter China, except for Hong Kong SAR, Macao SAR, and Taiwan for the purpose of this contract).
- 3.2 Exclusive sales in this contract means that B is the sole and only sales representatives for the product in China. The methods of sales include retail, wholesale, and distributorship, but it is not limited to what was before mentioned. A shall not give the third party the authority to sell the product in the region within the contract period. At the same time, A shall not sell the product in the region in A's own name, or through his/her supplier, manufacturer, or affiliated company.
- 3.3 To realize exclusive sales right mentioned above, the product the A provides to B shall be packaged product ready for sales.

- 3.4 Where B obtains exclusive sales right stipulated in this contract, he/she does not need to pay additional fees to A. Still, A shall make his/her utmost efforts to guarantee exclusive sales of the product in the region.
- 3.5 Both A and B are independent corporations. Signing and implementing this contract do not forge any of partnership, association, or affiliation between two parties, which does not involv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r guarantee. Any of the two parties shall not prove, declare, interpret, or express against this fact to the third party while doing business.

4. Duration of Contract

- 4.1 Based on bilateral consultation, duration of this contract will be one year from Month, Day, Year to Month, Day, Year, except for the cases where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 4.2 Where one party request extension of contract period, the intent shall be notified to the counter party in writing 30 days prior to contract expiration. Under the principle that contract terms are not change, the contract can be extended for another year through negotiation.
- 4.3 Where B recorded satisfactory sales performance without any grave illegal activities within the contract period, B has priority to sign the contract.

5. Product Order and Delivery Process

- 5.1 Both A and B shall decide the price once in six months, establishing the product purchase plan in cooperation for the next six months.
- 5.2 Detailed transactions and its terms between parties will be finalized with the order sheet confirmed by the both parties, except the case where both parties have made a separate agreement. Matters that are not written or determined on the order sheet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is contract.
- 5.3 When it is necessary for B to purchase the product, B will send an order sheet in writing to A. In response, A will then reply in writ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deliver the product in no less than 10 days from the date A has received the order sheet. The order sheet that B sent to A can be withdrawn before A confirms the document in writing.
- 5.4 Where A has confirmed in writing that it is possible to deliver the product requested by B's order sheet, the order sheet is officially confirmed on the date that B has received A's letter of confirmation. B cannot withdraw the order sheet after it has been confirmed, on any account.
- 5.5 Where A needs to request any revision on the order sheet, A may require B to do so in writing. After B has received A's request for revision, B sends a new order sheet to A. The process of sending, revising, and confirming the new order sheet will be abide by Article 5.3 ~ 5.5 until A confirms the final order sheet.
- 5.6 The order sheet shall describe type, specification, price (including total price, unit cost, discount price, etc.), quantity, date of delivery, demand for insurance and packaging, destination of delivery,

and special means of transportation. Delivery of the product shall be generally made in no less than 35 days after B has established the L/C of the product, except for cases where there is separate explanation or agreement in the order. The product shall be shipped to FOB(Incheon Harbor of South Korea), unless there are separate explanation or agreement in the order sheet. General means of packaging which B requests will be used. The insurance policy of B will cover the product.

- 5.7 A goes through all the necessary procedure regarding the product export from Korea at A's own expense. Based on valid documentary evidence provided by A, B goes through all the necessary process regarding importing to China at B's own expense.
- 5.8 Where B discovers the quality of product fails to meet quality standard written on the order sheet, B shall immediately raise objections to A. This objection shall be made within 20 days after the cargo has arrived at the confirmed destination written on the order sheet of B. If B exceeds this time limit, B cannot further make objections about the quality of the cargo.

6. Price and Settlement of Payment

- 6.1 For the convenience of payment settlement, B shall deposit 50% of agreed payment of cargo to the account that A designated in no less than 7 days after the confirmation of the order sheet. Moreover, B shall establish an L/C for the remaining 50% of the payment in 15 days after the prepayment. Where B withdraws or violates the order sheet for many reasons, the prepayment will be

diverted to cancellation charge. If B cannot fully cover the cancellation charge or reimburse damage with prepayment, B shall continue to reimburse until damages are fully paid.

6.2 Prices (including total price and unit cost) on the order sheet that was delivered and confirmed according to the contract will all be FOB price, unless there is separate agreement or explanation on the order sheet.

6.3 A shall guarantee that prices of the product provided to B is not higher than the price suggested to the third party under the same condition.

6.4 On the account of price change, B shall give a written notice at least 15 days in advance of the date on which B hopes to apply the changed price.

6.5 Prepayment for cargo will be made by T/T, while the other payments will be by L/C. L/C shall be irrevocable and clear documentary credit.

6.6 Every price unit and currency for payment will be in US dollar, unless there are separat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B shall be responsible for foreign currency exchange and remittance in the process of payment.

6.7 In executing the terms of the order sheet of this contract, B will be responsible for all tax expenses in the process of importing the product from China.

6.8 B shall observe the time limit for the payment. B cannot unduly delay the payment.

7. Quality Assurance and Product Defect

7.1 Quality Standards for the product that A sells to B is as follows:

7.2 Products are deemed to be disqualified in the following cases:

- a) Products are deemed to be disqualified in the following cases:
- b) Shortage of quantity and excess of margin of error
- c) Where the quality of the product fails to the quality standards
- d) Where there is the Chinese or Korean government authorized report of significant defects in the product and the technology.

7.3 A shall guarantee the consistency of the product quality, and that the quality meets the quality, safety, and other standards which are requir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ese law as mandatory.

7.4 To realize the aim of this contract, A shall provide two sets of samples which are sealed after the contract takes into effect. Whenever the technology applied to product changes for reason, the sample change occurs correspondingly. The sealed sample can be used as a reference on account of quality dispute. The quality of sealed sample shall be compared and verified against A's identical product.

8. After-sales Service

A shall provide B after-sales service when needed. Warranty period for after-sales service will be one year from the date A completes his/her delivery. Detailed methods of after-sales service are as follows:

9. Reservation of Management Autonomy

B assumes all the expenses and management risks as well as management performance arise from the business activities, unless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in this contract. Any agreement in this contract should not be deemed as permission that A will grant any kinds of business profit or loss.

10. Force Majeure and Immunity Clause

10.1 Force Majeure in this contract refers to incidents that are unable to predict or impossible to prevent or avoid. For example, it includes earthquakes, typhoon, flood, fire, and other natural disasters; war, military up rise; civil demonstration, walkout, government transportation ban because of other than one reason, and other prohibitions and limitations.

10.2 Where it become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duties, liabilities, guarantees and permission (all referred to as “duty”) according to the contract, the party who cannot fulfill the duty shall inform the counter party of this situation in 15 days after the uncontrollable incidents takes place, by providing evidence or documents of evidence certifying it was irresistible. However, the party who cannot fulfill the duty shall actively seek for reasonable remedies in order to prevent any further loss or damage.

10.3 Where uncontrollable incidents take place, both parties of the contract shall decide whether they will revise the agreement considering the effects of uncontrollable incidents, and whether they will exempt partly or wholly the duties of the party impossible of carrying out his/her duties.

11.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Breach of Contract

- 11.1 Unless it was exempt with the counter party's written consent or separate agreement in the contract, the party violating agreed permission, guarantee, duties(referred to as "duty"), and responsibilities agreed in the contract shall bear the corresponding legal responsibility.
- 11.2 Where one of both parties breaches the duty agreed in the contract, the counter party may request commitment of duty or suitable remedy within reasonable period in writing. Where the requested party fails to take relief action at the right moment, the requesting party may autonomously take relief measures, and the expenses and expenditures derived from execution of these relief measures are whol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who broke the contract. In emergency, the party who observed the contract may directly take reasonable remedy without notification procedure for mutual interest, and the defaulter pays the full expenses and expenditures derived from execution of these relief measures.
- 11.3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ty who breached the contract has the liability, the party should compensate any losses occurred to the counter party due to the breach of contract, including compensation for property or physical damages, provisional payment, penalty tax and additional tax, lawyers fee and court expenses, arrears, and compensation for the third party. However, i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what was mentioned above.
- 11.4 Where one party breaches the contract, cancellation charge should be paid in addition to loss compensation. The cancellation charge shall be paid in US dollars.

11.5 The agreement stipulated in provisions mentioned above shall not be taken as limita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who suffers he damage due to breach of contract or barrier to obtain various rights and interests supplemented by separate agreement in the order sheet confirmed by both parties.

11.6 Where one party waives his/her right on account of breach of contract in certain cases, it should not be deemed to relinquish the right in other breach of contract cases.

12. Termination of Contract

12.1 Except for the cases where the stipulated Termination conditions are met, this contract shall not be cancelled unilaterally prior to its expiration.

12.2 In spite of the agreed conditions, this contract may be cancelled by both parties consent in prior to its expiration.

12.3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contract, A may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the due expiration date with a unilateral written notification 15 days in advance. However, A shall provide reasonable evidences.

- a) Where B failed to pay prepayment within prescribed term, and where B did not pay prepayment within five days even after A's demand for payment
- b) Where B did not establish L/C to A, or the established L/C does not meet requirements of this contract, and where L/C was not established within 10 days even after A's demand for establishment or the established L/C does not meet requirements of this contract

- 12.4 On account of the following cas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contract, B may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the due expiration date with a unilateral written notification 15 days in advance. However, B shall provide reasonable evidences.
- a) Where the product that A delivered has serious quality defect, causing a number of customer complaints or grave accidents (EX. Accidents that can claim compensation for physical/property damage)
 - b) Where A delays product delivery for more than 30 days

13.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Contract and Post Management

- 13.1 Where this contract expires or terminates for some reasons, B shall discontinue sales of the product and B shall recover the inventories based on the initial price. If A does not agree on product recovery, B may dispose inventories by selling the product within three month from the contract expiration or termination.
- 13.2 Where this contract expires or terminates for some reasons, article 6,7,11,14,16 and 17 of this contract are still valid.
- 13.3 Where this contract expires or terminates for some reasons, both A and B shall complete payment for freight and other expenses in lump sum within 10 days.

14. Confidentiality Clause

- 14.1 All the commercial confidentiality in this contract belongs to the original right holder, and the signing, issuing, and enforcing this contract does not affect the ownership. Any of counter party's commercial confidentiality that one party gets to know or obtain

in implementing this contract may be used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of this contract in good faith within expiration date.

14.2 The commercial confidentiality of the counter party shall not be revealed or be allowed the use before the expiration date without the written consent. It should not be allowed to gain profit taking advantage of the commercial confidentiality other than the use for this contract.

14.3 The confidentiality clause has equal effect on the employees of every parties (including B's sales representatives), and is valid for two years sinc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contract.

15. Possibility of clause separation

15.1 If one or several clause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are deemed to be null, illegal, and non-enforceable by some laws or regulations, the effectiveness, legitimacy, and enforceability of the other clauses shall not be affected. Both parties shall replace the clauses deemed null, illegal, and non-enforceable with valid ones through considerate negotiation, and economic benefit caused by the replaced clause shall be similar to that caused by the original agreement.

15.2 Titles of this contract were voluntarily set for convenience, which shall not affect interpretation and comprehension of this contract and in any other ways.

16. Settlement of Dispute

On the account of dispute over content, interpretation, effectuation, validity, and implementation of this contract, both A and B shall pursue settlement through amicable negotiation. Where one party does not want to negotiate or dispute was not settled within 30 days through negotiation, one party file for arbitration to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located in Seoul, Korea and undertakes arbitration under the rule of arbitration authority. Arbitration award is final and legally binding to parties of the dispute.

17. Governing Law

Signing, issuing, effectuation, implementation, modification, validity, cess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applied where there is no governing regulation in the Korean Law.

18. Miscellaneous

18.1 All the notification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written form and be sent to the parties via fax to the number written on the first page of this contract except the cases where there is a separate code. The notification takes effect on the first working day from the date when fax was sent. Except for cases where one party informs the other party any changes with the fax number by valid mean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any notification sent at

the fax number listed on this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sent to recipient on the date when the notification becomes effective.

18.2 After signing, this contract may be modified or supplemented in writing with both A and B's consent.

18.3 This contract will be written in Korean and Chinese. The two copies of same formatted contract in Korean will be made so that A and B both have each copy. The two copies of same formatted contract in Chinese will be made so that A and B both have each copy. The contracts in both languages have equal legal effect. Where the meaning of contract conflicts with the other in the other language, Korean shall be the standard.

Blank Below. Next page is for signature

(This page do not contain body but signature.)

Both A and B cosign this contract on Month, Date, Year in Ci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Corporation Representative/Authorized Representative:
Signature)

B:

Corporation Representative/Authorized Representative:
Signature)

2. 独家经销合同

甲方：(卖方、许可方)

法定代表人：职务：

法定住址：

电话号码：传真号码：

乙方：(买方、被许可方)

法定代表人：职务：

法定住址：

电话号码：传真号码：

前 言

乙方因在中国市场拓展经销甲方的_____产品(以下‘产品’)的需要,甲乙双方经过友好协商,现就独占经销合作关系下的相关安排,订立本合同,供双方遵照执行。

正 文

一、甲方陈述与保证

甲方为本协议的签署、交付和履行目的,陈述和保证如下:

1.1 其具备所有的法律权力、资格,在需要授权的情况下,业已取得所有

充分和必要的授权，可有效签订本协议，并受本协议的完全和完整的法律约束；

- 1.2 其在本协议下的所有承诺、义务均会得到其完整有效地履行；
- 1.3 甲方为产品的生产商，对产品拥有完整的权利，本合同的签署和履行不会侵害任何第三者对产品的合法权利。
- 1.4 甲方拥有对产品的完整的知识产权，本合同的签署和履行不会侵害任何第三者的知识产权。
- 1.5 甲方具有在本国法律下具有从事本协议下经营活动的能力，而且本协议的签订、交付和履行均不会对甲方目前和今后进入的其他合同、协议和契约中约定的其义务构成冲突，也不会与任何可能与甲方有关的司法裁决、法庭命令等冲突。

二、乙方陈述与保证

乙方为本协议的签署、交付和履行目的，陈述和保证如下：

- 2.1 其具备所有的法律权力、资格，在需要授权的情况下，业已取得所有充分和必要的授权，可有效签订本协议，并受本协议的完全和完整的法律约束；
- 2.2 其在本下协议的所有承诺、义务均会得到其完整有效地履行；
- 2.3 乙方具有在本国法律下具有从事本协议下经营活动的能力，而且本协议的签订、交付和履行均不会对乙方目前和今后进入的其他合同、协议和契约中约定的其义务构成冲突，也不会与任何可能与乙方有关的司法裁决、法庭命令等冲突；乙方同时在此确认，甲方系基于并实质依赖于乙方在本条下的各项陈述、承诺以及保证内容的真实性、完整性和有效性的前提条件下，而与乙方达成本协议的。

三、供货和独家经销的许可

- 3.1 经双方协商确定,乙方在本协议下的独占经销产品的区域为中华人民共和国(简称中国,为本合同的目的,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全境。
- 3.2 为本协议目的,独占经销的含义为:乙方为产品在中国的唯一销售总代理,乙方经销该产品的方式包括但不限于零售、批发、发展次级代理商等,而甲方在本协议有效期内,不得再行授权第三方在该区域内经销产品,也不得自行或者通过其供应商、生产商或者关联企业向该区域经销产品。
- 3.3 为实现本条前述条款下的独占经销权利,甲方向乙方的供货产品为最终包装产品。
- 3.4 乙方取得本协议下的独占经销权利,不需要向甲方另行缴纳其他任何费用,但是乙方承诺并保证尽最大努力在独占经销区域内销售产品。
- 3.5 甲方和乙方均为彼此独立的企业法人或经营机构,双方不因本协议的签署、履行而存在或者产生合伙、合资或者联营关系,彼此不对对方的经营行为提供担保或者承担责任,任何一方在其经营活动中均不得向任何第三人作出与前述事实相反的证明、表示、解释或者表达。

四、合同有效期

- 4.1 甲乙双方协商一致同意,本合同的有效期为1年,自____年____月____日至____年____月____日止,但本合同另有约定的除外。
- 4.2 任何一方若要求续约本合同,可在本合同期满前30天,以书面形式通知另一方,经过双方协商一致后,可按照合同条款不变原则续展本协议1年。
- 4.3 乙方在本协议有效期内经销产品业绩良好且未有重大违约行为的,乙方有续约优先权。

五、定货计划和订、交货程序

- 5.1 甲乙双方在合作过程中每半年共同拟订下一个半年的订货计划，并按照本合同的约定确定适用价格。
- 5.2 除双方在本协议中另有约定，双方的具体供货交易以及交易条件由双方之间的互传订单予以确认，互传订单上缺失或者不确定的部分按照本合同的约定执行。
- 5.3 乙方需要购买货物时，应当向甲方发出书面订单，甲方收到订单后应当在10天之内已书面方式回复是否可以按照订单的内容发货。乙方向甲方发出的订单可以在收到甲方书面确认之前予以撤销。
- 5.4 甲方如果书面确认可以按照乙方订单的内容发货，则在乙方收到甲方的书面确认之日为订单正式确定之日。订单确定后，乙方不得以任何理由撤销订单。
- 5.5 如果甲方对订单有修改要求，可以书面向乙方提出修改要求。乙方收到甲方书面修改要求后，向甲方重新发出订单。乙方发出订单以及甲方修改或确认订单的程序按照5.3至5.5的约定处理，直至甲方最终确认订单。
- 5.6 订单应记载或者确认适用的品种与规格、价格(包括总价和单价，包括适用的抵扣额)、订货需求量、交货期限要求、保险要求、包装要求、交货目的地以及特殊的运输方式要求等。除订单另有说明或者约定外，交货期限应不晚于乙方对该批货物开具信用证后的35天；除订单另有说明或者约定外，交货方式为FOB(韩国INCHON港)，运输方式为海运；包装按照乙方要求的通用包装；保险由乙方自理。
- 5.7 甲方应当自行承担费用并自行解决产品从韩国出口所需要办理的所有手续。乙方应当自行承担费用并在甲方提供的有效单据的基础上，自行负责完成货物进口中国环节所有前置和当前手续。

- 5.8 为检查货物的质量,乙方应在货物到达乙方在订单中确定的目的地后的10天内完成质量检验,商品检验的费用由乙方自行承担。质量检验的具体方式如下:_____。
- 5.9 乙方如果在质量检验中发现货物质量不符合订单要求的,应当立即向甲方提出异议。乙方提出异议的时间不得迟于货物到达乙方在订单中确定的目的地后的20天。超过该期限后,乙方不得对质量问题提出异议。

六、价格和货款结算

- 6.1 为方便结算,确定订单后7天内,乙方应当向甲方指定的帐户支付订单中约定货款的50%,作为预付款,并应当在支付预付款后的15天内就剩余50%的货款向甲方开具信用证。乙方因各种原因取消订单货做出起其它违约行为,该预付款将作为违约金处理。该预付款不足以支付违约金或不足以赔偿甲方损失的,乙方应当继续向甲方赔偿,直至足额清偿完毕。
- 6.2 本合同下发出和确认的订单价格(包括单价和总价),除非该确认订单另有约定或者说明外,应为FOB(韩国INCHON港)价格。
- 6.3 甲方应保证其向乙方提供的供货价格,在同等条件下不高于其给予任何第三方的供货价格。
- 6.4 甲方对货物的价格发生变动,如果希望适用于乙方,应至少提前15天书面通知乙方。
- 6.5 货物款项,除预付款使用T/T方式支付外,其他均使用L/C形式结算。该L/C应为不可撤消的、清洁的、即期跟单信用证。
- 6.6 除非双方另有约定,所有订单下的计价和支付货币为美元。乙方应当自行解决在支付各类款项时的外汇兑换和/或汇出的问题。
- 6.7 因履行本合同下供货订单而由乙方进口中国场所发生的所有进口

环节费用和税款由乙方自行承担。

6.9 乙方应当严格遵守付款期限，不得无故拖延支付任何款项。

七、质量保证和产品瑕疵

7.1 甲方出售给乙方的产品质量标准如下：

7.2 当发生下述任一情况的，所属批次产品属于交货不合格：

- a) 数量短缺超过允许误差范围的；
- b) 货物质量不符合质量标准的；
- c) 在韩国政府下属的质量检验机构或中国政府下属的质量检验机构有经过证实的、针对货物或者其采用技术的重大瑕疵报告的。

7.3 甲方应保证其供货产品品质的一致性，以及必须符合中国法律和中国政府对同类产品实施的各类强制和法定质量标准、安全标准和其他适用标准。

7.4 为本协议目的，甲方应在合同生效后向乙方提供封样的产品每种规格二套，并在产品技术指标合理变化时进行相应替换，该封样产品可在发生任何产品质量争议时作为检验对照物使用，封样产品的品质水平具有对甲方相同产品的品质具有终局性的证明或者对比评判的作用。

八、售后服务

甲方有义务向乙方提供必备的售后服务。售后服务义务期间为每一次甲方交货后的一年。具体的售后服务方式约定如下：

九、经营自主权的保留

除本协议另有约定外，乙方应当自行承担其经营过程中的各项成本和经营

风险，并完全享有其经营成果；本协议的任何约定，不应被理解为甲方向乙方承诺任何经营回报或者承诺分担经营亏损。

十、不可抗力和免责条款

- 10.1 不可抗力是指无法预见并且对其发生和后果无法防止或避免的事件，例如地震、台风、水灾、火灾和其他自然灾害，战争、暴动和类似的军事行动，民间骚动以及罢工、怠工，非因任何一方的原因而产生的政府的禁运令、征用、禁止令或其他限制(以上统称为不可抗力事件)。
- 10.2 因不可抗力事件而使任何一方在本协议下的义务、责任、承诺或者保证(统称为义务)无法按照约定履行的，该受阻方应当在不可抗力发生之日起的15天内书面通知对方，并向对方提供相应的证据或能够证明不可抗力的公证文件。但是受阻方仍应当积极采取合理的补救以避免更大的损失。
- 10.3 不可抗力事件发生后，双方应根据不可抗力事件对本协议的影响，决定是否修改本协议，以及是否部分或者全部地免除受阻方在本协议中的义务。

十一、违约责任

- 11.1 除非经另一方书面同意豁免或免除或者本协议另有约定，任何一方违反其在本协议下的任何承诺、保证、义务或责任的(在本条中统称为义务)，均应继续履行其在本协议下的各项义务，并承担其他相应的法律责任。
- 11.2 甲、乙各方违反其在本合同下任一义务的，对方有权书面通知其继续履行其在本合同下的义务或书面通知其在通知方给定的合理期限

내采取合理的补救措施。如违约方未及时采取补救措施,通知方可以采取自救措施而且因采取自救措施而遭受的费用或者花销应由违约方全额承担。在紧急情况下,遵守合同的一方为双方的共同利益,不经通知程序而直接采取合理的自救措施,因此而遭受的费用或者花销应由违约方全额承担。

- 11.3 不论违约方是否具有过错,在本合同下任一违约事件发生时,违约方均应当赔偿对方因该违约事件而遭受的各类损失,包括但不限于财产或人身损害赔偿或者其垫付款、惩罚性关税、律师和法庭费用、滞纳金和对第三方的赔款。
- 11.4 任何一方违反本合同,除了给对方赔偿损失外,还应当支付违约金。违约金的数额为:美金_____元。
- 11.5 本条前述约定在任何时候不应被理解为对被违约方在适用法律下的各项权利和利益的限制,也不应视为对双方在依照本合同所确定的任何订单上所另行补充约定或者取得的各项权利和利益的限制。
- 11.6 一方在某一特殊情况下,对另一方的违约行为放弃其权利,不应视为在其他情况下,对违约方的类似违约行为放弃其权利。

十二、协议的提前解除

- 12.1 非因本条下约定的解除条件的满足,本协议不应被任何一方提前解除。
- 12.2 尽管本协议下的其他规定,本协议可因甲乙双方的协商一致而提前解除。
- 12.3 本合同履行过程中发生如下任一情况的,甲方可以单方面提前15天书面通知的方式在本合同正常到期日前解除本合同,但甲方必须随附提供相应的和合理的证明材料:
 - a) 乙方没有在规定的期限内支付预付款,并经过甲方催促后5天内能不支付预付款的。

- b) 乙方没有向甲方开具信用证、或者乙方开具的信用证不符合本合同要求,经甲方催促后10天内仍不开具信用证或开具的信用证仍不符合本合同规定的。

12.4 本合同履行过程中发生如下任一情况的,乙方可以以单方书面提前15天通知的方式在本合同正常到期日前解除本合同,但乙方必须随附提供相应的和合理的证明材料:

- a) 甲方供货产品发生严重质量问题,或者遭到最终消费者的大量投诉,或者发生较为严重的质量事故(包括人身损害事故和/或财产损害事故);
- b) 甲方迟延交货30天以上的。

十三、协议终止或者解除后的相关安排

- 13.1 无论本协议如何终止或者解除,乙方应停止销售产品,但甲方按照原价回购甲方的库存产品,如果甲方不同意回购的,乙方有权在协议终止或者解除后的3个月内继续销售已处理库存。
- 13.2 无论本协议如何终止或者解除,本协议第六、七、十一、十四、十六和十七条仍继续有效。
- 13.3 无论本协议如何终止或者解除,尽管本协议中的另行规定,甲乙双方应当在十日内一次性结清所有货款和其他往来费用。

十四、保密条款

- 14.1 本协议下的各项商业秘密应归原权利所有人所有,并不因本协议的签署、交付和履行而改变权属性质。任何一方对在本协议履行过程中知晓或者取得的商业秘密,只有在本协议有效期内为经营本协议下业务而可善意使用。
- 14.2 在本协议有效期内,一方未经对方书面同意,不得向任何第三方披

露或者允许第三方使用对方的商业秘密,或者为自己谋取本协议之外的利益。

- 14.3 前述保密条款,对于任何受约束方(包括乙方的各次级代理商)的雇员同样有效,并在本协议协议终止或者解除后2年内继续有效。

十五、条款的可分割性

- 15.1 若本协议中规定的一项或多项条款,根据任何法律或法规在任何一方面被视为无效、不合法或不可执行,本协议中其余各项约定的有效性、合法性和可执行性并不因此在任何方面受到影响或者损害。双方应通过诚意磋商,努力以有效的规定取代那些无效、不合法或不可执行的约定,而该等有效的规定所产生的经济效果应尽可能与那些无效、不合法或不可执行的约定所产生的经济效果相似。
- 15.2 本协议所用标题仅为方便查阅而设,不应被用于解释、理解或以其他方式影响本协议条款的含义。

十六、纠纷的解决

甲乙双方就本合同的内容、解释、生效、效力和履行而发生争议,应先友好协商解决,任何一方不愿协商或者在30天内协商未果的,任何一方均可向位于韩国首尔市大韩商事仲裁院申请仲裁解决,按照该仲裁机 当时有效的仲裁规则进行仲裁。仲裁裁决是终局性的,对争议各方具有最终的法律约束力。

十七、适用法律

本合同的签署、交付、生效、履行、变更、效力、终止和解释等,均适用大韩民国的法律,大韩民国法律没有规定的,适用国际惯例。

十八、其他

- 18.1 本协议下的任何通知，除另有约定外，均应采取书面形式以传真发出至本协议首页上记载的各方的传真号码，并在传真通知发出之日后的第一工作日为生效日，除非任何一方以本协议下约定的有效方式另行通知对方其更改了传真号码，否则按照本协议下登记的被通知方的传真号码发出的任何通知，均应被视为在通知生效日已由被通知方收到并生效。
- 18.2 本协议在签署之后可根据甲乙双方的共同协商一致，以书面方式进行修改、修正或补充。
- 18.3 本协议以中文和韩文书就。中文文本的协议一式二份，甲乙双方各执一份，韩文文本的协议一式二份，甲乙双方各执一份。各份文本具有同等法律效力。当两种文字版本的协议发生语意冲突的，以中文文本为准。

以下无正文，下接签字页

(本页为签字页，上接主文页)

本合同由甲乙双方于____年__月__日在中华人民共和国____市共同签署。

甲方：

法定代表人/授权代表人：

(签章)

乙方：

法定代表人/授权代表人

(签章)

3. 지역총판계약서

갑: (라이센서, 매도인)

법인대표: 직 위:

법정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을: (라이센시, 매수인)

법인대표: 직 위:

법정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언

을은 중국시장에서 갑의 _____제품(이하 ‘제품’) 판매에 대한 수요에 응하여, 갑, 을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독점판매관계에 관하여 본 계약 체결하며, 쌍방이 이를 준수하여 집행할 것이다.

본문

1. 갑의 진술과 보증

갑은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보증을 하는 바이다.

1.1 갑은 모든 법적권리, 자격을 갖고 있고 위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모든 충분하고 필요한 위임을 받은 상태이며,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고 본 계약에 따라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 1.2 본 계약에서의 갑이 승낙한 모든 사항과 의무는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 1.3 갑은 제품의 생산자이며 제품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그 어떤 제3자의 제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 1.4 갑은 제품에 대한 완전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으며,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그 어떤 제3자의 지적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 1.5 갑은 본국의 법률 하에서 본 계약에서 규정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이 갑이 현재 또는 향후에 기타 계약, 협의에서 약정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갑과 관련된 사법재판, 법원의 명령 등과도 충돌이 없을 것이다.

2. 을의 진술과 보증

을은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보증을 하는 바이다.

- 2.1 을은 모든 법적권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위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모든 충분하고 필요한 위임을 받은 상태이며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본 계약에 따라 완전하게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 2.2 본 계약에서의 을이 승낙한 모든 사항과 의무는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 2.3 을은 본국의 법률하에서 본 계약에 규정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이 을이 현재 또는 금후에 기타 계약, 협의에서 약정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을과 관련된 사법재판, 법원의 명령 등과도 충돌이 없을 것이다.

3. 제품의 공급과 독점판매 라이선스

- 3.1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을 제외)의 지역(판매지역)으로 한다.
- 3.2 본 계약에서의 독점적 판매라 함은 을이 본 계약의 제품에 대하여 판매지역 내의 유일한 판매 총 대행으로 되는 것이며 을의 판매 취급 방식은 소매, 도매, 서브 판매대행 지정 등 수단을 포함하며 여기에 제한하지 않는다. 갑은 계약기간내에 기타 제3자에게 이 지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권한을 주어서는 안되며 자신의 명의로 혹은 그의 공급자, 생산자 혹은 계열사를 통하여 동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
- 3.3 상기 조항에서의 독점적 판매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직접 판매가 가능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 3.4 을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갑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갑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독점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할 것을 보증한다.
- 3.5 갑과 을은 서로 독립적인 기업법인으로, 쌍방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 인하여 합작, 합자 혹은 연합경영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상대방의 경영행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어느 일방이든 그 경영활동중에서 제3자에게 이러한 사실과 상반되는 증명, 의사표시, 해석 혹은 표현을 하여서는 안된다.
- 3.6 을은 판매지역 내에 한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갑의 서면허가를 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판매지역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하급 소매상 또는 서브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4. 계약의 유효기간

- 4.1 갑을 쌍방의 협상에 의하여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____년 ____월 ____일 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본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2 임의의 일방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경우, 계약 만료 30일 전에 서면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쌍방의 협상에 따라 계약조건이 변하지 않는 원칙하에 본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 4.3 을이 본 계약 기간 내에 제품을 판매한 실적이 좋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 을은 우선 계약체결권을 가진다.

5. 제품의 주문과 납품 절차

- 5.1 갑, 을 쌍방은 합작 과정에 매 6개월에 한번씩 공동으로 다음번 6개월의 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을 약정한다.
- 5.2 쌍방이 본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의 구체적인 거래 및 거래의 조건은 쌍방 간에 확인한 주문서에 의하여 확정된다. 주문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확정하지 않은 부분은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 5.3 을이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주문서를 발송하며, 갑은 주문서를 받은 후 10일 내에 서면 방식으로 주문서의 내용에 따라 제품 발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한다. 을이 갑에게 발송한 주문서는 갑의 서면 확인을 받기 전에 철회 가능하다.
- 5.4 갑이 을의 주문서에 따라 제품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을이 갑의 서면확인을 받은 날에 주문서가 정식 확정된 것으로 한다. 주문서가 확정된 후 을은 그 어떤 이유로든 주문서를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 5.5 갑이 주문서에 대하여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을에게 수정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서면 수정요구를 받은 후 갑에게 새로운 주문서를 발송한다. 을이 주문서를 발송하고 갑이 주문서를 수정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갑이 최종 주문서를 확인할 때까지 5.3부터 5.5조의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 5.6 주문서에는 제품의 종류와 규격, 가격(총 가격과 단가, 할인금액 등을 포함), 수량, 납품기간, 보험에 대한 요구, 포장에 대한 요구, 납품의 목적지 및 특수한 운송방식 등의 요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오더에 별도의 설명 혹은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납품시간은 일반적으로 을이 당해 제품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35일 내로 한다. 주문서에 별도의 설명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납품 방식은 FOB(한국 인천항)이고 운송방식은 해상운송으로 한다. 포장은 을이 요구하는 일반 포장방식으로 하며 보험은 을이 책임진다.
- 5.7 갑은 자체의 비용으로 제품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속을 한다. 을은 자체의 비용으로 갑이 제공하는 유효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중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속을 한다.
- 5.8 을은 품질검사에서 화물의 품질이 주문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은 화물이 을의 주문서에 확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후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당해 기한을 초과한 경우 을은 품질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가격과 대금결산

- 6.1 결산의 편리를 위하여 주문서를 확정된 후 7일 내에 을은 갑이 지정한 계좌에 주문서에 약정한 화물대금의 50%를 입금하여 선불금으로 한다. 또한 선불금을 지급한 후 15일 내에 나머지 50% 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을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주문서를 철회하거나 기타 위약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해 선불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한다. 선불금으로 전부 위약금을 지불할 수 없거나 갑의 손실을 전액 배상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전액을 배상할 때까지 갑에게 계속 배상해야 한다.

- 6.2 본 계약에 따라 발송하고 확인한 주문서의 가격(단가와 총가격을 포함)은 당해 주문서에 별도의 약정 혹은 설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FOB(한국 인천항)가격이다.
- 6.3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제품 가격이 동등한 조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보증한다.
- 6.4 갑은 제품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을에 당해 변동가격 적용을 희망할 시 15일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5 화물대금의 지불은 선불금을 T/T방식으로 지불하는 외에 기타 금액은 L/C로 지불한다. 당해 L/C는 취소불능의, 클리어한 화환신용장이어야 한다.
- 6.6 쌍방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모든 주문서에 대한 가격단위와 지불화폐는 모두 미화로 한다. 을은 화물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의 외환 환전과 외환 송금문제를 자기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 6.7 본 계약에 따른 주문서를 이행함으로써 인하여 을이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을 전부 부담한다.
- 6.8 을은 대금지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품질보증과 제품의 하자

- 7.1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7.2 다음의 경우, 당해 제품은 납품 품질 불합격으로 본다.
- a) 수량 부족하며, 규정된 오차범위를 초과할 경우
 - b) 화물의 품질이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c) 한국정부 소속의 품질검증기구 또는 중국정부 소속의 품질검증기구에서 증명한, 화물이나 그 기술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경우

- 7.3 갑은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국 법률과 중국 정부에서 이런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제적인 품질기준, 안전기준과 기타 기준에 부합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 7.4 본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은 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을에게 밀봉한 샘플 2세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합리적으로 변화할 때마다 상응하게 교환해야 한다. 당해 밀봉한 샘플은 품질분쟁이 발생할 경우 품질검사대조물로 사용할 수 있다. 밀봉한 샘플의 품질수준은 갑의 동일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증명 또는 대조평가하는 작용을 한다.

8. A/S

갑은 을에게 필요한 A/S를 제공해야 한다. A/S의무기간은 매번 갑이 납품을 완료한 후 1년으로 한다. 구체적인 A/S방식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9. 경영 자주권의 보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이 있는 외에 을은 그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경영 리스크를 자체로 부담하고, 모든 경영 성과를 가질 수 있다. 본 계약에서의 어떠한 약정이라도 갑이 을에게 그 어떤 경영수익을 승낙하거나 손실을 부담한다는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10. 불가항력 및 면책조항

- 10.1 본 계약 이행의 목적에 있어서 불가항력은 예측 불가하고 그의 발생 및 결과를 방지 혹은 회피 할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지진, 태풍, 홍수, 화재, 및 기타 자연재해; 전쟁, 폭란 및 유사한 군사행동; 민간에서 발생하는 소동, 태업, 어느 일방의 원인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정부의 운수 금지령, 징수, 금지령 혹은 기타 제한을 말한다.

- 10.2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하여 임의의 일방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 책임, 승낙 혹은 보증(모두 “의무”라 칭함)을 계약에 따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이행불능의 일방은 불가항력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상응한 증거나 불가항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단, 이행불능 일방은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더 큰 손실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10.3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쌍방은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에 근거하여 본 계약서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불능 일방의 의무를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11. 위약 책임

- 11.1 상대방의 서면 동의로 면제를 받거나 본 계약서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라도 본 계약에서 약정한 승낙, 보증, 의무 혹은 책임(본 조에서 “의무”라 통칭한다.)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11.2 갑, 을 각측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계약의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통지 받은 자가 제때에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통지를 한 일방은 자체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지출은 위약을 한 일방이 전액 부담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준수한 일방은 쌍방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통지절차를 취하지 않고 직접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지출은 위약을 한 일방이 전액 부담한다.
- 11.3 위약측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본 계약에서 어떠한 위약 사건이 발생하

더라도 위약측은 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각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산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기타 가지급금, 추징관세와 가산세, 직접적인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 연체료 및 제3자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1.4 임의의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 발생하는 손실을 배상하는 외에, 위약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 금액은 미화 ____불로 한다.
- 11.5 상기 조항의 약정은 계약 위반 피해를 당한 일방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쌍방이 본 계약서에 따라 확정된 주문서에서 별도로 보충한 약정 혹은 여러가지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장애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 11.6 일방이 특정한 경우에 상대방의 위약행위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할 경우, 기타 상황에서도 위약자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는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계약의 사전 해지

- 12.1 본 조에서 약정한 해지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해서라도 사전에 해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 12.2 본 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갑,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해지할 수 있다.
- 12.3 본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의 정상 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은 상응한, 합리적인 증명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 a) 을이 규정한 기간 내에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갑이 독촉을 하였음에도 5일 내에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b) 을이 갑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한 신용장이 본 계약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갑이 독촉을 하였음에도 10일 내에 신용장을 개설

하지 않았거나 개설한 신용장이 본 계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12.4 본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일방적으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의 정상 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은 상응한, 합리적인 증명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 a) 갑이 납품한 제품이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량 컴플레인이 들어왔거나 심각한 품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신체 손해배상사고 및/혹은 재산손해사고)
- b) 갑이 30일 이상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13.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의 사후처리

13.1 본 계약서가 어떤 이유로 종료 혹은 해지될 경우, 을은 제품의 판매를 중지해야 하고 갑은 최초의 가격대로 계산하여 을의 재고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만약 갑이 회수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 종료 혹은 해지 후의 3개월 내에 잔고제품을 계속 판매하여 재고를 처리할 수 있다.

13.2 본 계약서가 어떤 이유로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의 제 6,7,11,14,16과 17조는 계속 유효하다.

13.3 본 계약서가 어떤 이유로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갑, 을 쌍방은 10일 내에 1회에 모든 화물대금 및 기타 거래비용을 정산 완료해야 한다.

14. 비밀 유지 조항

14.1 본 계약서에 있어서의 각종 상업 비밀은 기존의 권리자에 의해 소유되며 본 계약의 체결, 교부 및 이행으로 그 소유권이 변하지 않는다. 임의의 일방은 본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 알게 되거나 혹은 취득한 상대방의 상업 비밀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내에 본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영위하는 목적으로 선의로 사용할 수 있다.

- 14.2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기타 제 3자에게 상대방의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여 본 계약서 외의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3 상기 비밀 유지 조항은 모든 당사자(을의 각 서브 판매대행 포함)의 직원에게도 동등하게 그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서 종료 혹은 해지 후 2년내에 계속 유효하다.

15. 조항의 분할 가능성

- 15.1 만약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한개 혹은 몇 개 조항이 그 어떤 법률 혹은 법규에 의하여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로 간주될 경우, 본 계약서의 기타 조항의 유효성, 합법성 및 집행 가능성은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쌍방은 성의있는 협상을 통하여 유효한 규정으로 위의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의 약정을 대체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체규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은 원래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과 비슷해야 한다.
- 15.2 본 계약에서 사용한 조항의 표제는 열람의 편리를 위해 설정한 것이며 본 계약서 조항의 내용을 해석, 이해하는 것에 사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6. 분쟁의 해결

갑, 을 쌍방은 본 계약의 내용, 해석, 효력의 발생, 효력 및 이행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우선 우호적으로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일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30일 내에 협상으로 결과를 보지 못한 경우, 임의의 일방은 한국 서울시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당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분쟁의 각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17. 준거법

본 계약의 체결, 교부, 효력의 발생, 이행, 변경, 효력, 중지 및 해석 등은 모두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 관습을 적용한다.

18. 기타

18.1 본 계약 하의 모든 통지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서면방식으로 본 계약서 첫 페이지에 기재한 각 당사자의 팩스번호로 발송해야 하며, 팩스를 발송한 날 이후의 첫 근무일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한다. 일방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유효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팩스번호의 변경을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서 기재한 연락처의 팩스번호에 발송한 어떠한 통지도 모두 통지 효력 발생일에 통지를 받는 자에게 발송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8.2 본 계약서는 체결한 후 갑,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18.3 본 계약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한다. 한국어 계약은 1식 2부로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각 1부를 보관하고, 중국어 계약은 1식 2부로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각 언어의 계약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가지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의미가 상충하는 경우, 한국어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여백, 다음 페이지는 서명 페이지

(본 페이지는 서명 페이지이며 본문 없음)

본 계약은 갑, 을 쌍방이 ____년 ____월 ____일에 중화인민공화국 ____시에서
공동으로 서명한다.

갑:

법인대표/수권대표:

(날인)

을:

법인대표/수권대표:

(날인)

3. Exclusive Distributorship Contract

By and between

A:

Representative of corporation:

Address:

Phone number:

Status (Licensor, Seller) :

Fax number:

And

B:

Representative of corporation:

Address:

Phone number:

Status (Licensee, Buyer) :

Fax number:

Preface

The parties to this contract, both A and B have agreed to sign this exclusive sales contract through an amicable negotiation in response to B's demand to sell A's produ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duct') in the Chinese market. Both parties shall enter into and perform the contract abiding by the articles and terms of this contract.

Body

1. A's Statement and Guarantee

In the purpose of signing, issuing and enforcing this contract, A has guaranteed and stated as follows;

- 1.1 A has all the legal rights and qualifications, and is sufficiently delegated in every necessary matter that needs commission. With the right to enter into a valid contract, A shall perform the fully duties according to this agreement.
- 1.2 A shall fully perform every agreed terms and duties.
- 1.3 A is the manufacturer of the product with the full right. Signing and implementation of this contract shall not infringe any of the rights of the third party.
- 1.4 A has fu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ver the product. Signing and implementation of this contract shall not infringe any of the rights of the third party.
- 1.5 A is entitled to perform business activitie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under the domestic law. Signing, issuing and implementation of this contract will not come into conflict with any of responsibilities prescribed in other present or future agreement and consultation or judicial trials and orders of courts related to A.

2. B's Statement and Guarantee

In the purpose of signing, issuing and enforcing this contract, B has guaranteed and stated as follows;

- 2.1 B has all the legal rights and qualifications, and is sufficiently delegated in every necessary matter that needs commission. With the right to enter into a valid contract, B shall perform the fully duties according to this agreement.
- 2.2 B shall fully perform every agreed terms and duties.
- 2.3 B is qualified to do business activities that are stipulated under this agreement under the domestic laws. Signing, issuing and fulfilling this contract will not come into conflict with any of responsibilities prescribed in other present or future agreement and consultation or judicial trials and orders of courts related to B.

3. Supply of Product and Exclusive Sales License

- 3.1 B shall practice exclusive sales rights over the product under this contract agreed by both parti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China, except Hong Kong SAR, Macao SAR, and Taiwan for the purpose of this contract).
- 3.2 Exclusive sales in this contract mean that B will be the only sales representative of the product in this contract within the region. The means of B's sales include retail, wholesale, and sub-sales representatives, which will not be limited to what were mentioned above. A shall not give the third party the right to sell the product within the region during the contract period and sell the product within the same region under his/her name or through his supplier, manufacturer, or any other affiliated body.
- 3.3 To realize exclusive sales right mentioned above, the product the A provides to B shall be packaged product ready for sales.

- 3.4 Where B obtains exclusive sales right stipulated in this contract, he/she does not need to pay additional fees to A. Still, A shall make his/her utmost efforts to guarantee exclusive sales of the product in the region.
- 3.5 Both A and B are independent corporations. Signing and implementing this contract do not forge any of partnership, association, or affiliation between two parties, which does not involv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r guarantee. Any of the two parties shall not prove, declare, interpret, or express against this fact to the third party while doing business.
- 3.6 B shall sell product within the region only mentioned above. Unless A's written permission is obtained, B shall not sell the product other than the region by any other means, or allow retailers or sub-sales representatives to sell the product in regions other than the region mentioned in the contract.

4. Duration of Contract

- 4.1 Based on bilateral consultation, duration of this contract will be one year from Month, Day, Year to Month, Day, Year, except for the cases where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 4.2 Where one party request extension of contract period, the intent shall be notified to the counter party in writing 30 days prior to contract expiration. Under the principle that contract terms are not change, the contract can be extended for another year through negotiation.
- 4.3 Where B recorded satisfactory sales performance without any grave illegal activities within the contract period, B has priority to sign the contract.

5. Product Order and Delivery Process

- 5.1 Both A and B shall decide the price once in six months, establishing the product purchase plan in cooperation for the next six months.
- 5.2 Detailed transactions and its terms between parties will be finalized with the order sheet confirmed by the both parties, except the case where both parties have made a separate agreement. Matters that are not written or determined on the order sheet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is contract.
- 5.3 When it is necessary for B to purchase the product, B will send an order sheet in writing to A. In response, A will then reply in writ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deliver the product in no less than 10 days from the date A has received the order sheet. The order sheet that B sent to A can be withdrawn before A confirms the document in writing.
- 5.4 Where A has confirmed in writing that it is possible to deliver the product requested by B's order sheet, the order sheet is officially confirmed on the date that B has received A's letter of confirmation. B cannot withdraw the order sheet after it has been confirmed, on any account.
- 5.5 Where A needs to request any revision on the order sheet, A may require B to do so in writing. After B has received A's request for revision, B sends a new order sheet to A. The process of sending, revising, and confirming the new order sheet will be abide by Article 5.3 ~ 5.5 until A confirms the final order sheet.
- 5.6 The order sheet shall describe type, specification, price (including total price, unit cost, discount price, etc.), quantity, date of delivery, demand for insurance and packaging, destination of delivery,

and special means of transportation. Delivery of the product shall be generally made in no less than 35 days after B has established the L/C of the product, except for cases where there is separate explanation or agreement in the order. The product shall be shipped to FOB(Incheon Harbor of South Korea), unless there are separate explanation or agreement in the order sheet. General means of packaging which B requests will be used. The insurance policy of B will cover the product.

- 5.7 A goes through all the necessary procedure regarding the product export from Korea at A's own expense. Based on valid documentary evidence provided by A, B goes through all the necessary process regarding importing to China at B's own expense.
- 5.8 Where B discovers the quality of product fails to meet quality standard written on the order sheet, B shall immediately raise objections to A. This objection shall be made within 20 days after the cargo has arrived at the confirmed destination written on the order sheet of B. If B exceeds this time limit, B cannot further make objections about the quality of the cargo.

6. Price and Settlement of Payment

- 6.1 For the convenience of payment settlement, B shall deposit 50% of agreed payment of cargo to the account that A designated in no less than 7 days after the confirmation of the order sheet. Moreover, B shall establish an L/C for the remaining 50% of the payment in 15 days after the prepayment. Where B withdraws or violates the order sheet for many reasons, the prepayment will be

diverted to cancellation charge. If B cannot fully cover the cancellation charge or reimburse damage with prepayment, B shall continue to reimburse until damages are fully paid.

6.2 Prices (including total price and unit cost) on the order sheet that was delivered and confirmed according to the contract will all be FOB price, unless there is separate agreement or explanation on the order sheet.

6.3 A shall guarantee that prices of the product provided to B is not higher than the price suggested to the third party under the same condition.

6.4 On the account of price change, B shall give a written notice at least 15 days in advance of the date on which B hopes to apply the changed price.

6.5 Prepayment for cargo will be made by T/T, while the other payments will be by L/C. L/C shall be irrevocable and clear documentary credit.

6.6 Every price unit and currency for payment will be in US dollar, unless there are separat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B shall be responsible for foreign currency exchange and remittance in the process of payment.

6.7 In executing the terms of the order sheet of this contract, B will be responsible for all tax expenses in the process of importing the product from China.

6.8 B shall observe the time limit for the payment. B cannot unduly delay the payment.

7. Quality Assurance and Product Defect

7.1 Quality Standards for the product that A sells to B is as follows:

7.2 Products are deemed to be disqualified in the following cases:

- a) Products are deemed to be disqualified in the following cases:
- b) Shortage of quantity and excess of margin of error
- c) Where the quality of the product fails to the quality standards
- d) Where there is the Chinese or Korean government authorized report of significant defects in the product and the technology.

7.3 A shall guarantee the consistency of the product quality, and that the quality meets the quality, safety, and other standards which are requir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ese law as mandatory.

7.4 To realize the aim of this contract, A shall provide two sets of samples which are sealed after the contract takes into effect. Whenever the technology applied to product changes for reason, the sample change occurs correspondingly. The sealed sample can be used as a reference on account of quality dispute. The quality of sealed sample shall be compared and verified against A's identical product.

8. After-sales Service

A shall provide B after-sales service when needed. Warranty period for after-sales service will be one year from the date A completes his/her delivery. Detailed methods of after-sales service are as follows:

9. Reservation of Management Autonomy

B assumes all the expenses and management risks as well as management performance arise from the business activities, unless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in this contract. Any agreement in this contract should not be deemed as permission that A will grant any kinds of business profit or loss.

10. Force Majeure and Immunity Clause

10.1 Force Majeure in this contract refers to incidents that are unable to predict or impossible to prevent or avoid. For example, it includes earthquakes, typhoon, flood, fire, and other natural disasters; war, military up rise; civil demonstration, walkout, government transportation ban because of other than one reason, and other prohibitions and limitations.

10.2 Where it become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duties, liabilities, guarantees and permission (all referred to as “duty”) according to the contract, the party who cannot fulfill the duty shall inform the counter party of this situation in 15 days after the uncontrollable incidents takes place, by providing evidence or documents of evidence certifying it was irresistible. However, the party who cannot fulfill the duty shall actively seek for reasonable remedies in order to prevent any further loss or damage.

10.3 Where uncontrollable incidents take place, both parties of the contract shall decide whether they will revise the agreement considering the effects of uncontrollable incidents, and whether they will exempt partly or wholly the duties of the party impossible of carrying out his/her duties.

11.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Breach of Contract

- 11.1 Unless it was exempt with the counter party's written consent or separate agreement in the contract, the party violating agreed permission, guarantee, duties(referred to as "duty"), and responsibilities agreed in the contract shall bear the corresponding legal responsibility.
- 11.2 Where one of both parties breaches the duty agreed in the contract, the counter party may request commitment of duty or suitable remedy within reasonable period in writing. Where the requested party fails to take relief action at the right moment, the requesting party may autonomously take relief measures, and the expenses and expenditures derived from execution of these relief measures are whol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who broke the contract. In emergency, the party who observed the contract may directly take reasonable remedy without notification procedure for mutual interest, and the defaulter pays the full expenses and expenditures derived from execution of these relief measures.
- 11.3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ty who breached the contract has the liability, the party should compensate any losses occurred to the counter party due to the breach of contract, including compensation for property or physical damages, provisional payment, penalty tax and additional tax, lawyers fee and court expenses, arrears, and compensation for the third party. However, i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what was mentioned above.
- 11.4 Where one party breaches the contract, cancellation charge should be paid in addition to loss compensation. The cancellation charge shall be paid in US dollars.

11.5 The agreement stipulated in provisions mentioned above shall not be taken as limita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who suffers he damage due to breach of contract or barrier to obtain various rights and interests supplemented by separate agreement in the order sheet confirmed by both parties.

11.6 Where one party waives his/her right on account of breach of contract in certain cases, it should not be deemed to relinquish the right in other breach of contract cases.

12. Termination of Contract

12.1 Except for the cases where the stipulated Termination conditions are met, this contract shall not be cancelled unilaterally prior to its expiration.

12.2 In spite of the agreed conditions, this contract may be cancelled by both parties consent in prior to its expiration.

12.3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contract, A may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the due expiration date with a unilateral written notification 15 days in advance. However, A shall provide reasonable evidences.

- a) Where B failed to pay prepayment within prescribed term, and where B did not pay prepayment within five days even after A's demand for payment
- b) Where B did not establish L/C to A, or the established L/C does not meet requirements of this contract, and where L/C was not established within 10 days even after A's demand for establishment or the established L/C does not meet requirements of this contract

12.4 On account of the following cas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contract, B may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the due expiration date with a unilateral written notification 15 days in advance. However, B shall provide reasonable evidences.

- a) Where the product that A delivered has serious quality defect, causing a number of customer complaints or grave accidents (EX. Accidents that can claim compensation for physical/property damage)
- b) Where A delays product delivery for more than 30 days

13.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Contract and Post Management

13.1 Where this contract expires or terminates for some reasons, B shall discontinue sales of the product and B shall recover the inventories based on the initial price. If A does not agree on product recovery, B may dispose inventories by selling the product within three month from the contract expiration or termination.

13.2 Where this contract expires or terminates for some reasons, article 6,7,11,14,16 and 17 of this contract are still valid.

13.3 Where this contract expires or terminates for some reasons, both A and B shall complete payment for freight and other expenses in lump sum within 10 days.

14. Confidentiality Clause

14.1 All the commercial confidentiality in this contract belongs to the original right holder, and the signing, issuing, and enforcing this contract does not affect the ownership. Any of counter party's commercial confidentiality that one party gets to know or obtain

in implementing this contract may be used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of this contract in good faith within expiration date.

14.2 The commercial confidentiality of the counter party shall not be revealed or be allowed the use before the expiration date without the written consent. It should not be allowed to gain profit taking advantage of the commercial confidentiality other than the use for this contract.

14.3 The confidentiality clause has equal effect on the employees of every parties (including B's sales representatives), and is valid for two years sinc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contract.

15. Possibility of clause separation

15.1 If one or several clause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are deemed to be null, illegal, and non-enforceable by some laws or regulations, the effectiveness, legitimacy, and enforceability of the other clauses shall not be affected. Both parties shall replace the clauses deemed null, illegal, and non-enforceable with valid ones through considerate negotiation, and economic benefit caused by the replaced clause shall be similar to that caused by the original agreement.

15.2 Titles of this contract were voluntarily set for convenience, which shall not affect interpretation and comprehension of this contract and in any other ways.

16. Settlement of Dispute

On the account of dispute over content, interpretation, effectuation, validity, and implementation of this contract, both A and B shall pursue settlement through amicable negotiation. Where one party does not want to negotiate or dispute was not settled within 30 days through negotiation, one party file for arbitration to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located in Seoul, Korea and undertakes arbitration under the rule of arbitration authority. Arbitration award is final and legally binding to parties of the dispute.

17. Governing Law

Signing, issuing, effectuation, implementation, modification, validity, cess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applied where there is no governing regulation in the Korean Law.

18. Miscellaneous

18.1 All the notification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written form and be sent to the parties via fax to the number written on the first page of this contract except the cases where there is a separate code. The notification takes effect on the first working day from the date when fax was sent. Except for cases where one party informs the other party any changes with the fax number by valid mean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any notification sent at

the fax number listed on this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sent to recipient on the date when the notification becomes effective.

18.2 After signing, this contract may be modified or supplemented in writing with both A and B's consent.

18.3 This contract will be written in Korean and Chinese. The two copies of same formatted contract in Korean will be made so that A and B both have each copy. The two copies of same formatted contract in Chinese will be made so that A and B both have each copy. The contracts in both languages have equal legal effect. Where the meaning of contract conflicts with the other in the other language, Korean shall be the standard.

Blank Below. Next page is for signature

(This page does not contain body but signature.)

Both A and B cosign this contract on Month, Date, Year in Ci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Corporation Representative/Authorized Representative:
Signature)

B:

Corporation Representative/Authorized Representative:
Signature)

3. 地区总经销合同

甲方：(卖方、许可方)
 法定代表人： 职务：
 法定住址：
 电话号码： 传真号码：

乙方：(买方、被许可方)
 法定代表人： 职务：
 法定住址：
 电话号码： 传真号码：

前 言

乙方因在中国市场拓展经销甲方的_____产品(以下‘产品’)的需要, 甲乙双方经过友好协商, 现就独占经销合作关系下的相关安排, 订立本合同, 供双方遵照执行。

正 文

一、甲方陈述与保证

甲方为本协议的签署、交付和履行目的, 陈述和保证如下:

1.1 其具备所有的法律权力、资格, 在需要授权的情况下, 业已取得所有

充分和必要的授权，可有效签订本协议，并受本协议的完全和完整的法律约束；

- 1.2 其在本协议下的所有承诺、义务均会得到其完整有效地履行；
- 1.3 甲方为产品的生产商，对产品拥有完整的权利，本合同的签署和履行不会侵害任何第三者对产品的合法权利。
- 1.4 甲方拥有对产品的完整的知识产权，本合同的签署和履行不会侵害任何第三者的知识产权。
- 1.5 甲方具有在本国法律下具有从事本协议下经营活动的能力，而且本协议的签订、交付和履行均不会对甲方目前和今后进入的其他合同、协议和契约中约定的其义务构成冲突，也不会与任何可能与甲方有关的司法裁决、法庭命令等冲突。

二、乙方陈述与保证

乙方为本协议的签署、交付和履行目的，陈述和保证如下：

- 2.1 其具备所有的法律权力、资格，在需要授权的情况下，业已取得所有充分和必要的授权，可有效签订本协议，并受本协议的完全和完整的法律约束；
- 2.2 其在本下协议的所有承诺、义务均会得到其完整有效地履行；
- 2.3 乙方具有在本国法律下具有从事本协议下经营活动的能力，而且本协议的签订、交付和履行均不会对乙方目前和今后进入的其他合同、协议和契约中约定的其义务构成冲突，也不会与任何可能与乙方有关的司法裁决、法庭命令等冲突；乙方同时在此确认，甲方系基于并实质依赖于乙方在本条下的各项陈述、承诺以及保证内容的真实性、完整性和有效性的前提条件下，而与乙方达成本协议的。

三、供货和独家经销的许可

- 3.1 经双方协商确定,乙方在本协议下的经销产品的区域为中华人民共和国(简称中国,为本合同的目的,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_____地区(‘经销区域’)。
- 3.2 为本协议目的,独占经销的含义为:乙方为产品在上述经销区域的唯一销售总代理,乙方经销该产品的方式包括但不限于零售、批发、发展次级代理商等,而甲方在本协议有效期内,不得再行授权第三方在该区域内经销产品,也不得自行或者通过其供应商、生产商或者关联企业向该区域经销产品。
- 3.3 为实现本条前述条款下的独占经销权利,甲方向乙方的供货产品为最终包装产品。
- 3.4 乙方取得本协议下的独占经销权利,不需要向甲方另行缴纳其他任何费用,但是乙方承诺并保证尽最大努力在独占经销区域内销售产品。
- 3.5 甲方和乙方均为彼此独立的企业法人或经营机构,双方不因本协议的签署、履行而存在或者产生合伙、合资或者联营关系,彼此不对对方的经营行为提供担保或者承担责任,任何一方在其经营活动中均不得向任何第三人作出与前述事实相反的证明、表示、解释或者表达。
- 3.6 乙方只得在经销区域内进行产品销售。未经甲方书面许可,乙方不得以任何形式在经销区域以外的其他区域进行销售,也不得使其下属的零售商或次级代理商在经销区域以外的其他地区进行销售。

四、合同有效期

- 4.1 甲乙双方协商一致同意,本合同的有效期为1年,自____年____月____日至____年____月____日止,但本合同另有约定的除外。
- 4.2 任何一方若要求续约本合同,可在本合同期满前30天,以书面形式通

知另一方，经过 方协商一致后，可按照合同条款不变原则续展本协议1年。

- 4.3 乙方在本协议有效期内经销产品业绩良好且未有重大违约行为的，乙方有续约优先权。

五、定货计划和订、交货程序

- 5.1 甲乙双方在合作过程中每半年共同拟订下一个半年的订货计划，并按照本合同的约定确定适用价格。
- 5.2 除双方在本协议中另有约定，双方的具体供货交易以及交易条件由双方之间的互传订单予以确认，互传订单上缺失或者不确定的部分按照本合同的约定执行。
- 5.3 乙方需要购买货物时，应当向甲方发出书面订单，甲方收到订单后应当在10天之内已书面方式回复是否可以按照订单的内容发货。乙方向甲方发出的订单可以在收到甲方书面确认之前予以撤销。
- 5.4 甲方如果书面确认可以按照乙方订单的内容发货，则在乙方收到甲方的书面确认之日为订单正式确定之日。订单确定后，乙方不得以任何理由撤销订单。
- 5.5 如果甲方对订单有修改要求，可以书面向乙方提出修改要求。乙方收到甲方书面修改要求后，向甲方重新发出订单。乙方发出订单以及甲方修改或确认订单的程序按照5.3至5.5的约定处理，直至甲方最终确认订单。
- 5.6 订单应记载或者确认适用的品种与规格、价格(包括总价和单价，包括适用的抵扣额)、订货需求量、交货期限要求、保险要求、包装要求、交货目的地以及特殊的运输方式要求等。除订单另有说明或者约定外，交货期限应不晚于乙方对该批货物开具信用证后的35天；除订单另有说明或者约定外，交货方式为FOB(韩国INCHON港)，运输方式为海运；包装按照乙方要求的通用包装；保险由乙方自理。

- 5.7 甲方应当自行承担费用并自行解决产品从韩国出口所需要办理的所有手续。乙方应当自行承担费用并在甲方提供的有效单据的基础上,自行负责完成货物进口中国环节所有前置和当前手续。
- 5.8 为检查货物的质量,乙方应在货物到达乙方在订单中确定的目的地后的10天内完成质量检验,商品检验的费用由乙方自行承担。质量检验的具体方式如下:_____。
- 5.9 乙方如果在质量检验中发现货物质量不符合订单要求的,应当立即向甲方提出异议。乙方提出异议的时间不得迟于货物到达乙方在订单中确定的目的地后的20天。超过该期限后,乙方不得对质量问题提出异议。

六、价格和货款结算

- 6.1 为方便结算,确定订单后7天内,乙方应当向甲方指定的帐户支付订单中约定货款的50%,作为预付款,并应当在支付预付款后的15天内就剩余50%的货款向甲方开具信用证。乙方因各种原因取消订单货做出起其它违约行为,该预付款将作为违约金处理。该预付款不足以支付违约金或不足以赔偿甲方损失的,乙方应当继续向甲方赔偿,直至足额清偿完毕。
- 6.2 本合同下发出和确认的订单价格(包括单价和总价),除非该确认订单另有约定或者说明外,应为FOB(韩国INCHON港)价格。
- 6.3 甲方应保证其向乙方提供的供货价格,在同等条件下不高于其给予任何第三方的供货价格。
- 6.4 甲方对货物的价格发生变动,如果希望适用于乙方,应至少提前15天书面通知乙方。
- 6.5 货物款项,除预付款使用T/T方式支付外,其他均使用L/C形式结算。该L/C应为不可撤消的、清洁的、即期跟单信用证。

- 6.6 除非双方另有约定,所有订单下的计价和支付货币为美元。乙方应当自行解决在支付各类款项时的外汇兑换和/或汇出的问题。
- 6.7 因履行本合同下供货订单而由乙方进口中国场所发生的所有进口环节费用和税款由乙方自行承担。
- 6.9 乙方应当严格遵守付款期限,不得无故拖延支付任何款项。

七、质量保证和产品瑕疵

- 7.1 甲方出售给乙方的产品质量标准如下：
- 7.2 当发生下述任一情况的,所属批次产品属于交货不合格：
- a) 数量短缺超过允许误差范围的；
 - b) 货物质量不符合质量标准的；
 - c) 在韩国政府下属的质量检验机构或中国政府下属的质量检验机构有经过证实的、针对货物或者其采用技术的重大瑕疵报告的。
- 7.3 甲方应保证其供货产品品质的一致性,以及必须符合中国法律和中国政府对同类产品实施的各类强制和法定质量标准、安全标准和其他适用标准。
- 7.4 为本协议目的,甲方应在合同生效后向乙方提供封样的产品每种规格二套,并在产品技术指标合理变化时进行相应替换,该封样产品可在发生任何产品质量争议时作为检验对照物使用,封样产品的品质水平具有对甲方相同产品的品质具有终局性的证明或者对比评判的作用。

八、售后服务

甲方有义务向乙方提供必备的售后服务。售后服务义务期间为每一次甲方交货后的一年。具体的售后服务方式约定如下：

九、经营自主权的保留

除本协议另有约定外，乙方应当自行承担其经营过程中的各项成本和经营风险，并完全享有其经营成果；本协议的任何约定，不应被理解为甲方向乙方承诺任何经营回报或者承诺分担经营亏损。

十、不可抗力和免责条款

- 10.1 不可抗力是指无法预见并且对其发生和后果无法防止或避免的事件，例如地震、台风、水灾、火灾和其他自然灾害，战争、暴动和类似的军事行动，民间骚动以及罢工、怠工，非因任何一方的原因而产生的政府的禁运令、征用、禁止令或其他限制(以上统称为不可抗力事件)。
- 10.2 因不可抗力事件而使任何一方在本协议下的义务、责任、承诺或者保证(统称为义务)无法按照约定履行的，该受阻方应当在不可抗力发生之日起的15天内书面通知对方，并向对方提供相应的证据或能够证明不可抗力的公证文件。但是受阻方仍应当积极采取合理的补救以避免更大的损失。
- 10.3 不可抗力事件发生后，双方应根据不可抗力事件对本协议的影响，决定是否修改本协议，以及是否部分或者全部地免除受阻方在本协议中的义务。

十一、违约责任

- 11.1 除非经另一方书面同意豁免或免除或者本协议另有约定，任何一方违反其在本协议下的任何承诺、保证、义务或责任的(在本条中统称为义务)，均应继续履行其在本协议下的各项义务，并承担其他相应的法律责任。

- 11.2 甲、乙各方违反其在本合同下任一义务的，对方有权书面通知其继续履行其在本合同下的义务或书面通知其在通知方给定的合理期限内采取合理的补救措施。如违约方未及时采取补救措施，通知方可以采取自救措施而且因采取自救措施而遭受的费用或者花销应由违约方全额承担。在紧急情况下，遵守合同的一方为双方的共同利益，不经通知程序而直接采取合理的自救措施，因此而遭受的费用或者花销应由违约方全额承担。
- 11.3 不论违约方是否具有过错，在本合同下任一违约事件发生时，违约方均应当赔偿对方因该违约事件而遭受的各类损失，包括但不限于财产或人身损害赔偿或者其垫付款、惩罚性关税、律师和法庭费用、滞纳金和对第三方的赔款。
- 11.4 任何一方违反本合同，除了给对方赔偿损失外，还应当支付违约金。违约金的数额为：美金_____元。
- 11.5 本条前述约定在任何时候不应被理解为对被违约方在适用法律下的各项权利和利益的限制，也不应视为对双方在依照本合同所确定的任何订单上所另行补充约定或者取得的各项权利和利益的限制。
- 11.6 一方在某一特殊情况下，对另一方的违约行为放弃其权利，不应视为在其他情况下，对违约方的类似违约行为放弃其权利。

十二、协议的提前解除

- 12.1 非因本条下约定的解除条件的满足，本协议不应被任何一方提前解除。
- 12.2 尽管本协议下的其他规定，本协议可因甲乙双方的协商一致而提前解除。
- 12.3 本合同履行过程中发生如下任一情况的，甲方可以单方面提前15天书面通知的方式在本合同正常到期日前解除本合同，但甲方必须随附提供相应的和合理的证明材料：

- a) 乙方没有在规定的期限内支付预付款,并经过甲方催促后5天内能不支付预付款的。
 - b) 乙方没有向甲方开具信用证、或者乙方开具的信用证不符合本合同要求,经甲方催促后10天内仍不开具信用证或开具的信用证仍不符合本合同规定的。
- 12.4 本合同履行过程中发生如下任一情况的,乙方可以以单方书面提前15天通知的方式在本合同正常到期日前解除本合同,但乙方必须随附提供相应的和合理的证明材料:
- a) 甲方供货产品发生严重质量问题,或者遭到最终消费者的大量投诉,或者发生较为严重的质量事故(包括人身损害事故和/或财产损害事故);
 - b) 甲方迟延交货30天以上的。

十三、协议终止或者解除后的相关安排

- 13.1 无论本协议如何终止或者解除,乙方应停止销售产品,但甲方按照原价回购甲方的库存产品,如果甲方不同意回购的,乙方有权在协议终止或者解除后的3个月内继续销售已处理库存。
- 13.2 无论本协议如何终止或者解除,本协议第六、七、十一、十四、十六和十七条仍继续有效。
- 13.3 无论本协议如何终止或者解除,尽管本协议中的另行规定,甲乙双方应当在十日内一次性结清所有货款和其他往来费用。

十四、保密条款

- 14.1 本协议下的各项商业秘密应归原权利所有人所有,并不因本协议的签署、交付和履行而改变权属性质。任何一方对在本协议履行过程中知晓或者取得的商业秘密,只有在本协议有效期内为经营本协议下

业务而可善意使用。

- 14.2 在本协议有效期内，一方未经对方书面同意，不得向任何第三方披露或者允许第三方使用对方的商业秘密，或者为自己谋取本协议之外的利益。
- 14.3 前述保密条款，对于任何受约束方(包括乙方的各次级代理商)的雇员同样有效，并在本协议协议终止或者解除后2年内继续有效。

十五、条款的可分割性

- 15.1 若本协议中规定的一项或多项条款，根据任何法律或法规在任何一方面被视为无效、不合法或不可执行，本协议中其余各项约定的有效性、合法性和可执行性并不因此在任何方面受到影响或者损害。双方应通过诚意磋商，努力以有效的规定取代那些无效、不合法或不可执行的约定，而该等有效的规定所产生的经济效果应尽可能与那些无效、不合法或不可执行的约定所产生的经济效果相似。
- 15.2 本协议所用标题仅为方便查阅而设，不应被用于解释、理解或以其他方式影响本协议条款的含义。

十六、纠纷的解决

甲乙双方就本合同的内容、解释、生效、效力和履行而发生争议，应先友好协商解决，任何一方不愿协商或者在30天内协商未果的，任何一方均可向位于韩国首尔市大韩商事仲裁院申请仲裁解决，按照该仲裁机构当时有效的仲裁规则进行仲裁。仲裁裁决是终局性的，对争议各方具有最终的法律约束力。

十七、适用法律

本合同的签署、交付、生效、履行、变更、效力、终止和解释等，均适用大韩民国的法律，大韩民国法律没有规定的，适用国际惯例。

十八、其他

- 18.1 本协议下的任何通知，除另有约定外，均应采取书面形式以传真发出至本协议首页上记载的各方的传真号码，并在传真通知发出之日后的第一工作日为生效日，除非任何一方以本协议下约定的有效方式另行通知对方其更改了传真号码，否则按照本协议下登记的被通知方的传真号码发出的任何通知，均应被视为在通知生效日已由被通知方收到并生效。
- 18.2 本协议在签署之后可根据甲乙双方的共同协商一致，以书面方式进行修改、修正或补充。
- 18.3 本协议以中文和韩文书就。中文文本的协议一式二份，甲乙双方各执一份，韩文文本的协议一式二份，甲乙双方各执一份。各份文本具有同等法律效力。当两种文字版本的协议发生语意冲突的，以中文文本为准。

以下无正文，下接签字页

(本页为签字页，上接主文页)

本合同由甲乙双方于____年__月__日在中华人民共和国____市共同签署。

甲方：

法定代表人/授权代表人：

(签章)

乙方：

法定代表人/授权代表人

(签章)

최광호(법무법인 광장 소속 중국변호사)

학 력

중국 연변대학 법과대학 (2000)

한남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2004)

경 력

중국 변호사자격 취득(2001)

중국 상해회성변호사사무소(Rolmax Law Office Shanghai)

소속 변호사(2004-2007)

중국 상해해송변호사사무소(Hisense Law Firm) 소속 변호사(2007)

현재 법무법인 광장 서울사무소 중국변호사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전문분야

외국인투자, 부동산, 인수합병, 노동, 회사법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알기 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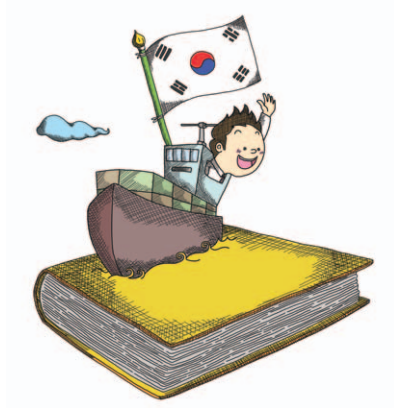
수출 계약서 작성 실무

중국 I 물건매매계약

인 쇄	2011년 3월
발 행	2011년 3월
발 행 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편집 및 감수	변필건 검사, 변희경 사무관, 우재형 법무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 화	02) 2110-3661
팩 스	02) 504-1378
전자우편	ildhd@moj.go.kr
인 쇄	에이앤에프 커뮤니케이션 02) 756-5171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52-01



알기 쉬운 수출 계약서 작성 실무